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탈경계시대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The Age of Transboundary Migratio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13:00 ~ 18:00

한성대학교 상상관 컨퍼런스홀

<주 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후 원>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프로그램

13:00~13:30	<p>개회사 : 황혜성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장) 환영사 :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소장) 축 사 :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 김경학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p>
1부. 유입국 내 난민의 지위와 시민권	
	사회 : 정상률 (명지대학교)
13:30~14:05	<p>발표1 베트남 난민의 미국 시민 되기 발표자 권은혜 (한성대학교) 토론자 한준성 (경희대학교)</p>
14:05~14:40	<p>발표2 They are guests, not refugees :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 발표자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안소연 (서울대학교)</p>
14:40~15:15	<p>발표3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지위 발표자 백승훈,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황의현 (서울대학교)</p>
15:15~15:30	1부 종합토론
15:30~15:50	휴식
2부.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사회 : 김지윤 (한성대학교)
15:50~16:25	<p>발표4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표자 김나경 (전남대학교) 토론자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p>
16:25~17:00	<p>발표5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발표자 이안나, 강영신, 신예지 (전남대학교) 토론자 오영섭 (인하대학교)</p>
17:00~17:35	<p>발표6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에 대한 고찰 발표자 김혜련 (한성대학교) 토론자 장무후이 (성균관대학교)</p>
17:35~17:50	2부 종합토론
17:50~18:00	폐회사 : 조규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장)

목 차

1부. 유입국 내 난민의 지위와 시민권

- 발표1. 베트남 난민의 미국 시민 되기_ 권은혜 9
- 발표2. They are guests, not refugees :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_ 이경수 20
- 발표3.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지위
_ 백승훈, 조정현 32

2부.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 발표4.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_ 김나경 53
- 발표5.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_ 이안나, 강영신, 신예지 69
- 발표6.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에 대한 고찰_ 김혜련 83

1부

유입국 내 난민의 지위와 시민권

발표 1.

베트남 난민의 미국 시민 되기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미국정부의 베트남 난민 정책, 1975~1980년
 - 1. 사이공 함락 이후 포드 행정부의 남베트남인 난민 정책, 1975년
 - 2. 카터 임기 중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심화에서 난민법 도입까지, 1977~1980년
- III. 베트남 난민의 미국화

I. 머리말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이후 수년 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대략 3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서 강제이주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난민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1975년에서 1995년까지 20년간 총 1백 3십만 명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떠나 해로 혹은 육로를 통해 망명지에 도착했다. 인도차이나 이주민의 63%를 차지하는 약 82만 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정착한 인도차이나 이주민은 약 42만 명 베트남인, 약 25만 명의 라오스인, 그리고 15만에 달하는 캄보디아인으로 구성된다.¹⁾

미국은 수십 만 인도차이나 이주민의 수용과 재정착을 지원했고 이 결정은 당시 미국 여론이나 기존 난민 정책의 기조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측면이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여전히 반 아시아 인종주의와 반이민정서가 강했던 데다 패전으로 베트남에 대한 인상은 더 악화되었다. 당시 여론 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이 난민 수용을 반대했다. 1970년대 이전 미국의 난민 정책이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었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유럽 백인일 경우, 그리고 공산주의를 피해 미국에서 망명지를 찾는 이들—헝가리인과 쿠바인—에게 우호적이었다. 비백인 난민을 대규모로 2십 년에 걸쳐 진행했다는 점에서 미국 난민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이 집중적으로 수용한 인도차이나 난민이 공산화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이들이라는 점에서 반공주의적 난민 정책의 기조가 유지된 측면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난민 구호와 재정착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인도차이나 난민 프로그램은 기존 난민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해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에 임기응변식으로 느리게 대응했던 첫 4년의 경험을 겪고 난 후인 1980년에 미국은 난민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준하는 난민의 정의를 명시한 난민법을 통과시켰다.²⁾

더 많은 희생자를 낸 난민 위기도 있었지만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강국과 유엔난민기구로 하여금 인권과 인도주의의 언어를 실천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인도차이나 난민 프로그램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해야 하는가? “비판적 난민학(Critical Refuge(e) Studie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미국 사회학자 엔 리 에스피리투에 따르면, 베트남 난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베트남의 폭력적인 공격자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선한 구원자로 담론적으로 변형”되고 그들의 과오를 “보상(makeover)”하고 소거해 버렸다.³⁾

1) 인도차이나 이주민과 관련한 통계는 다음을 참조했다. Amanda C. Demmer, *After Saigon's Fall: Refugees and US-Vietnamese Relations, 1975-20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 7.

2)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법적 난민(refugees)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일원이거나 정치적 견해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국적국가가 아닌 곳에 있으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국적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거나, 혹은,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 그리고 국적이 없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전 거주지가 있던 국가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이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혹은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유엔난민기구(UNHCR). <http://www.unhcr.org/3b66c2aa10.html>
 미국의 인도차이나 난민 프로그램에 도입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 저서를 참고했다. Carl Bon Tempo, *Americans At The Gate: The United States and Refugees during the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Demmer, *After Saigon's Fall*.

이 글의 전반부는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미국의 인도차이나 난민 정책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미국의 베트남 난민정책은 남베트남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했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인도차이나반도의 급변하는 정세로 난민의 수가 급증했지만 미국의 난민 구제 관행과 제도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의 도입을 지지하던 미국 관료와 의원, 그리고 비정부단체는 1980년에 유엔난민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도입에 성공한다. 후반부는 베트남인의 난민 경험과 미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베트남 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II. 미국정부의 베트남 난민 정책, 1975~1980년

1. 사이공 함락 이후 포드 행정부의 남베트남인 난민 정책, 1975년

역사가 칼 본 템포는 남베트남에 대해 “백악관, 의회, 국무부, 그리고 군대”가 느꼈던 “책임감”을 베트남 난민정책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한다.⁴⁾ 사이공 함락이 예측되던 1975년 4월 10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제랄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미국회사를 위해 일했던 “수만 명의 남베트남인에게 우리는 심오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기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도덕적 의무는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수백 만의 인도차이나 사람들”에게 있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첫 남베트남 난민 구조 정책은 1975년 4월 3일에서 27일 사이에 진행된 ‘아동항공구조작전(Babylift)’였다. 고아원의 베트남 아동을 미 군용기에 실어 미국에서 새 가정을 찾게 해준다는 이 계획은 여러모로 비판을 받았다. 작전 초반 아동을 태우고 필리핀 클라크기지로 이송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13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성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아동의 출생 기록과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모가 일시적으로 고아원에 맡겨 둔 아동까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아로 분류한 탓에 같은 해 아동항공구조작전으로 구조된 베트남 아동의 입양 중단 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한다.⁵⁾

3) Yên Lê Espiritu, *Body Counts: The Vietnam War and Militarized Refugees*, p. 35.

4) Bon Tempo, *Americans At The Gate*, p. 146-147.

1975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베트남인은 총 13만 명에 달했다. 베트남 난민의 수용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1965년 이민법 안에 명시된 대통령의 “가석방 권한(parole power)”이었다. 1965년 이래로 미국은 연간 이민 총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었기에 베트남 난민을 별도로 받으려면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이들을 “가석방자”로 미국에 입국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회의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었다. 무엇보다 여론은 베트남전과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경기 침체를 겪던 와중에 난민 수용이 미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백악관, 의회, 국무부 내 지지세력—포드, 케네디, 키신저 등—은 “남베트남 동맹세력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1975년 5월에 의회는 인도차이나 이주와 난민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약 5백만 달러의 난민 재정착 비용 지원을 승인했다. 남베트남인 중 구조 대상자 1순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친족, 2순위는 필리핀 소재 클라크 미 공군기지에 수용된 베트남인들, 그리고 3순위는 “고위험도” 베트남인과 그 가족이었다. 여기서 고위험도 베트남인은 미국정부의 공무원이거나 미국 시민을 베트남에서 소개하는 데 협조한 베트남 공무원, 미국 정부의 안보작전을 잘 아는 사람,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거나 공산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가리켰다.⁶⁾

“도덕적 의무”같은 수사는 1975년 미국의 남베트남 난민 구조 결정을 인도적 정책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이는 엄연히 미군이 수행한 군사작전이었고 전쟁으로 악화된 미국의 이미지를 뒤집을 출구 전략의 성격을 가졌다. 미국의 파괴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미국인들은 패전이 명백해진 후에 남베트남인을 구조하려던 미국의 노력에 대해 너무 미미하고 뒤늦었다고 평가했다. 1965년에서 1975년 사이 남베트남 공산화 저지와 자유 수호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총 250만 부대를 파견했고 8천만 리터의 화학약품을 살포했으며 1,535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전쟁으로 3백만 이상 사망자, 1천 4백만 부상자, 3십만 실종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남베트남인 약 1천2백만 명이 고향을 잃었다. 북베트남 난민의 규모는 파악조차 어려웠다. 북베트남에서 발생한 무수한 난민을 소거하고 남베트남 난민에게만 망명지를 제공한 미국 정책은 남베트남 난민을 베트남 난민으로 등치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에스피리투의 지적처럼, “1975년 이후 베트남을 떠난 난민이 과도하게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난민생산국가보다는 망명지 제공국가로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⁷⁾ 외교사가 데머에 따르면,

5) Demmer, *After Saigon's Fall*, 30-33; Espiritu, *Body Counts*, 42-43.

6) Demmer, *After Saigon's Fall*, 33-38, 48-50.

1975년에 베트남 난민 구조 결정을 내린 당시 미 고위급 관료들이 실제로 “침략자”에서 “보호자”로 미국의 이미지 변모를 의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들이 많았고 어떤 이들은 반공주의 노선에 따라, 케네디 상원의원 같은 이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베트남 난민 구조를 지지했기 때문이다.⁸⁾

1975년 포드 행정부의 노력은 베트남을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난민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스스로 바다로 나가 망명지를 찾았다. 난민 위기는 1976년에 새로 수립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RV)과 미국의 정부 간 협조가 필요했지만 포드는 베트남과 공식 관계를 맺길 거부했다. 포드 행정부가 베트남 난민 정책의 지속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마련하긴 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난민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회 사이의 입장과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은 복잡했고 난민 위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난민 위기의 실태 조사에 구멍도 많았다. 미국에 협조했던 남베트남인과 가족 외에도 승리한 하노이정권에 의해 차별받던 아메라시안—미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새 정권의 재교육 캠프에 수용된 백만 이상의 남베트남인이 있었다. 포드 행정부의 베트남 난민 정책이 남긴 과제는 후대 행정부의 숙제가 되었다.⁹⁾

2. 카터 임기 중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심화에서 난민법 도입까지, 1977-1980년

임기 시작 직후인 1977년 4월 카터 행정부는 파리회담에서 베트남과 만났다. 미국 측은 난민과 베트남에 남아있는 이들의 가족 재결합을, 베트남은 전후 복구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베트남 전후 복구 원조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측은 난민의 가족 재결합을 별도 사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부했다.

1977년과 1978년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한 난민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보트피플은 1975년 사이공 함락 직후부터 있었지만 1977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났다. 베트남은 새 국가에 필요한 군인과 관료 육성을 위해 남베트남인을 재교육캠프에서 강제로 가족과 분리해 구금했고 남베트남에 신경제구역을 조성해 남베트남

7) Espiritu, 40. 베트남전에 투입된 미국의 군사력과 베트남 인명 피해에 관련한 수치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Demmer, *After Saigon's Fall*, 47.

8) *Ibid.*, 47-48.

9) *Ibid.*, 50, 57-58.

인을 강제 이주시켜 감시했다. 많은 남베트남인들이 재교육캠프를 탈출해 인근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주했다. 나라도 작고 빈곤한 말레이시아의 난민 캠프에서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었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난민 캠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운이 좋은 난민의 경우 미국에 있는 가족의 후원으로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지만 이는 드문 일이었다. 바다로 탈출을 시도한 남베트남인은 인근 국가에서 망명지를 찾지 못해 익사하기도 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이 북베트남과 맞서 싸우도록 모집했던 몽족은 베트남 공산화 이후 인근 태국으로 피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루즈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난민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1977년 12월 이후 중국-베트남 국경에서는 베트남 중국인 인구의 월경이 지속되었다. 1977년 12월 베트남이 크메르루즈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일시적으로 침공했다 퇴각하지만 중국은 동맹국 캄보디아를 지지하며 베트남과 대립한다. 보복 차원에서 베트남이 자국 내 1백 2십만 중국인 인구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하자 수개월 사이 16만이 중국으로 월경했고 중국은 7월에 국경을 봉쇄했다.¹⁰⁾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는 난민관련 국제협약의 무력함을 보여주었다. 1951년 난민지위 관련 회의, 1967년 난민지위 관련 프로토콜에 따르면 망명지를 찾는 난민이 처음으로 도착한 나라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나라별로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상황에서 이 난민조약은 실현하기 어려웠다. 인도차이나 난민은 아세안 소속 국가들에 처음 도착했고 이 국가들은 난민 발생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니 해결도 미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민 수용을 거부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본국송환을 선호했다. 난민 위기 초기 유엔난민기구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떠나는 이들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취했다. 무엇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 이주자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하며 이들이 법적인 난민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¹¹⁾

인도차이나 반도의 심각한 난민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난민 대응 절차는 제도적 한계—이민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가석방권한을 특별하게 활용해야 함—과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1975-79년 사이 한 달 평균 난민 수는 100명에서 5만7천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실제 수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가석방 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난민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1977년 8월 카

10) Demmer, 64, 68-70, 75-77

11) Demmer, 55, 65, 69

터는 법무부에 요청해 1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대통령 산하 전담조직은 미국 이외 다른 곳에 정착할 기회가 없는 보트피플과 비 보트피플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태국 난민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지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전담조직의 예측에 따르면 1980년 말까지 2만5천~3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도래할 것이었고 그 비용은 1억2천에서 1억3천8백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업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난민의 대거 유입이 일자리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반대했다. 안 그래도 반아시아 정서가 심각했던 터에 베트남인을 비인간적으로 그렸던 <디어헌터>나 <지옥의 묵시록>같은 영화는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역시 1만5천 명의 가석방자를 추가하는 난민프로그램이 반대에 직면할 것이니 신중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카터는 1만5천 난민의 추가수용프로그램 도입을 포기했다.¹²⁾

캄보디아 난민 위기의 경우 중국 및 베트남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미국 관료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중앙정보국은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위기를 우려하며 대통령에게 난민 7천 명을 수용하자고 설득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캄보디아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8년 난민 위기가 심화되자 베트남은 입장을 바꿔 선제조건 없이 미국과 정상화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국무부는 인도차이나 난민 수용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냉전 논리가 승리하고 카터는 중국과 관계 회복 후 베트남과 대화하기로 결정했다.¹³⁾

1978년에서 1979년 사이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태국은 1978년 11월에 더 이상 이주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 인구에게 떠나라고 강요한다는 정황이 감지되었다. 1978년 11월 베트남은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캄보디아의 베트남 침공에 함께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듬해 1월 소련과 베트남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점령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태국을 향한 캄보디아 난민의 행렬이 이어졌다. 미국의 승인 아래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으로 수만 명의 베트남인 사상자, 그리고 거의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¹⁴⁾

12) Demmer, 59-66-67.

13) Demmer, 70-71, 76-77.

베트남과의 정상화가 난항을 겪는 중에도 미국은 베트남 난민 가족 재결합을 위해 베트남 관료를 만나 유엔난민기구와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통해 난민의 원만한 이주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카터행정부는 외교적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1978년 이후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의 심각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외교를 표방한 카터는 197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3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난민구호,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도차이나 이주민을 미국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보다 더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연설을 뒷받침할 행동은 제안하지 않았다. 정부의 자리를 메운 것은 인도주의적이고 항구적인 난민 정책의 수립을 지지하는 비정부 단체 <인도차이나 난민관련 시민위원회(Citizen Commission on Indochinese Refugees, CCIR)>였다. 1977년 12월에 CCIR은 정부, 주요 노동 및 정치단체, 그리고 유엔을 설득해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의 현실을 전달했다. CCIR은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을 1930년대 유럽 유대인 난민 위기 시기 미국 정부의 무관심과 비교하며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가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으로 다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차이나 이주자를 1930년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향해하다 결국 유럽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했던 유대인에 비유하면서 CCIR은 인도차이나 이주자의 난민 지위를 의심하던 유엔과 다른 국가들에게 이들의 재정착이 미국이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니며 난민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9년 1월 10일 CCIR은 언론 공개 회담에서 바다로 떠나는 베트남인의 수가 지난 11개월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대통령에게 “1930년대의 암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이 근본적 인권 위기에 신속하고 관대하게 대응을 주도”하라고 요청했다.¹⁵⁾

1979년 2월 카터는 미국 난민업무 조정청을 창설하고 의회와 행정부의 공조아래 1979년 3월 난민법안을 작성했다. 1980년 미 의회는 난민법을 통과시켰다. 1980년 난민법은 연간 5만 명씩 난민의 수용과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0세기 말 지정학에서 난민 위기가 항구적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난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5만 명 연간 할당을 채운 후에도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 아래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난민법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14) Demmer, 82-83.

15) Demmer, 71-75, 78-79, 83.

난민지위관련 규약의 난민 규정을 적용했다. 미국은 1968년에 난민지위관련규약에 서명했지만 난민정책을 수립할 때는 미국의 자체 선례와 난민 정의를 따랐다. 템포에 따르면, 1980년 난민법은 미국의 난민 개념을 국제사회의 그것과 일치시켰고 1950~80년 사이의 난민정책과 큰 차이를 보였다.¹⁶⁾

또한 미국은 유엔 주도로 여러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난민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과 유엔난민기구와 의견을 조율해 난민의 조속한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Orderly Departure Program 이었다. 1979년 5월 유엔난민기구와 베트남 정부는 ODP에 서명했고 이는 베트남을 떠나는 개인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와 같은 나라로 바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국적 협의체제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다에서 위험하게 떠돌거나 난민캠프에서 후원자를 찾아 너무 길게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었다. 1979년 6월 도쿄 경제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인도차이나 난민 재정착을 위한 국제적 협조를 요청했다. 회담 참석 6개 국가는 총 1억 6천만 달러 기부, 재이주 허용치를 기존의 12만 5천에서 26만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엔난민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도차이나 난민 구제 노력은 1990년대로 이어졌고 기구의 역사상 가장 상세하고 고비용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¹⁷⁾

III. 베트남 난민의 미국화

1975년과 1977년의 정책에 따라 공중과 해상에서 구조된 남베트남인은 미국으로 재정착을 허가받기 전에 난민 캠프에서 분류와 재교육을 받았다. 1975년에 구조된 베트남인들은 필리핀 혹은 괌의 난민 캠프로 보내졌다. 캠프에서 미 이민국의 관리들이 이들이 세 가지 선호범주—1순위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친족), 2순위 (필리핀 소재 클라크 미 공군기지에 수용된 베트남인들), 3순위 (“고위험도” 베트남인과 그 가족)—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했다. 여기서 고위험도 베트남인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거나 미국 시민을 베트남에서 소개하는 데 협조한 베트남 공무원, 미국 정부의 안보작전을 잘 아는 사람,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거나 공산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의미

16) Tempo, 173.

17) Demmer, 85, 89.

했다. 카터 임기 중에 나온 1977년 정책은 세 선호 순위에 속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는 베트남인을 4순위로 추가했다. 보안검색, 건강검진, 후원가족 매칭 후 본토로 와서는 4개의 캠프에서 생활하다가 재정착을 허락받았다. 미국 본토의 4개 캠프는 1975년 말에 문을 닫았고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소재한 캠프에서 난민을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적격자로 판단된 난민은 난민 캠프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며 모의 직업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정착할 수 있었다.¹⁸⁾

베트남 난민의 선별 과정은 이상적인 미국인의 상을 반영했다. 1956년 헝가리, 1970년대 쿠바를 탈출한 난민의 경우처럼 베트남 난민 중 공산주의자를 걸러 내기도 했다. 반공주의를 미국의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베트남 난민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베트남 난민 프로그램에는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미국인다움이라고 보는 새로운 시각이 포함되었고 인권 남용을 피해 떠난 이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예도 있었다.¹⁹⁾

아시아인이자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미국인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은 베트남 난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베트남 난민은 그저 아시아인 무리가 아니라 기존의 헝가리나 쿠바 난민처럼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고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²⁰⁾

정부는 베트남 난민의 법적 지위 안정화도 고려했다. 1980년 이전 미국 난민행정 체계에서 헝가리, 쿠바, 인도차이나 난민은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가 의회가 이들의 지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입법을 거쳐야 난민의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었다. 1980년 난민법은 베트남 난민을 일단 조건부로 수용하고 1년 뒤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허용할지를 결정하게 했다.

18) Tempo, 155-157

19) Tempo, 160-162.

20) Tempo, 164-165.

발표 2.

They are guests, not refugees :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

이 경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They are Guests, not Refugees: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

발표자: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이 연구는 2022년 8월 출간된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총서 2권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1. They are guests, not refugees

난민이 아니라 손님

-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유엔난민기구)
- 비호신청자: 난민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유엔난민기구)
- 손님: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 잠시 들른 사람 등을 의미하는 '손' 을 높여 부르는 말
- guest: a person who is invited to visit the home of or take part in a function organized by another (a person to whom hospitality is extended/ a person who pays for the services of an establishment(such as a hotel or restaurant))

2. 시리아 난민 발생과 레바논으로의 유입

시리아 내전 발발 및 난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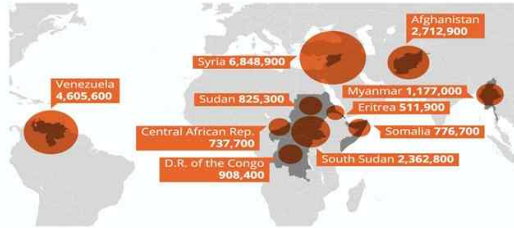


<https://geographicalimagination.com/2016/11/30/your-turn-doctor/>

시리아 난민 발생 규모

Mapping The World's Refugee Population

Top 10 origin countries of people displaced across borders at the end of 2021



Excludes asylum seekers abroad
Source: UNHCR



statista

<https://www.statista.com/chart/18436/total-number-of-refugees-by-origin-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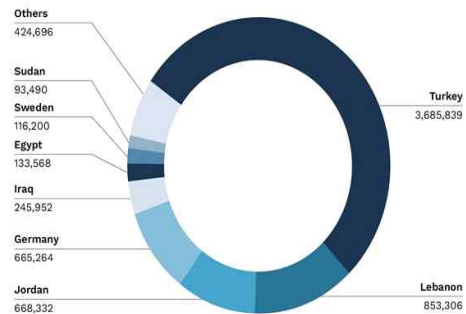
2023 공동학술대회_중동연구소_이경수

6

시리아 난민 발생 및 인근국으로의 이주

- 시리아 난민의 해외 이주는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 2014년 시리아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286만 명이 넘는 난민 발생
- 내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리아인들은 육로로 국경을 넘어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인근국으로 피란
- 피란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국내 실항민과 국외 피란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65%에 이름

2021년 중순 기준 세계 시리아 난민 분포



<https://coar-global.org/2022/06/13/recent-tensions-highlight-the-enduring-syrian-refugees-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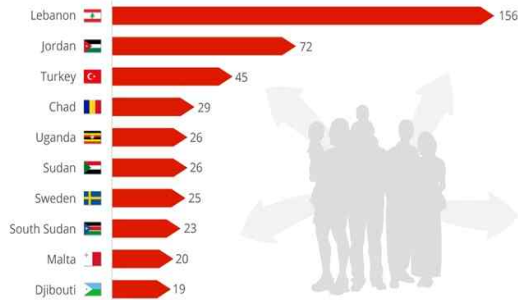
2023 공동학술대회_중동연구소_이경수

7

인구대비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 유입

Lebanon Has The Most Refugees Per 1,000 Population

Number of refugees per 1,000 inhabitants at the end of 2018



Source: UNHCR

statista

<https://www.statista.com/chart/8800/lebanon-has-by-far-the-most-refugees-per-capita/>

2023 공동육성대학_중등연구소_이경수

8

난민 유입의 가장 큰 원인 -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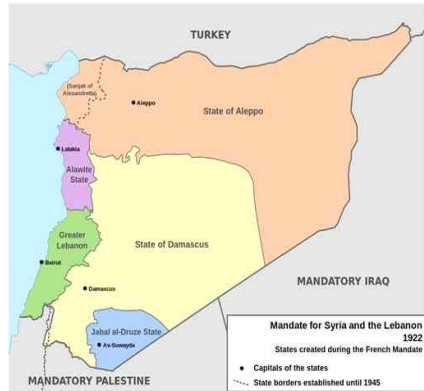
- 1993년 시리아와 레바논은 '경제·사회적 협력 및 조정(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Lebanon and Syria)'을 체결하며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경 출입을 가능케 함: 2014년까지 여권 없이 국내 신분증만으로 국경 이동이 가능
- 국경 지역인 레바논의 베카 계곡은 농업 지역으로 시리아인 계절노동자들이 오갔으며 레바논 내전 이후 레바논 내 건설업이 확장되면서 시리아인 노동자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 기존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은 내전 초기 다수 시리아인들이 레바논 당국의 규제 없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됨

2023 공동육성대학_중등연구소_이경수

9

레바논과 시리아의 지역적 이해

- 레바논은 1920년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으로 프랑스 위임통치 하에 있던 시기 대레바논국(The State of Greater Lebanon)로 불렸으며 1926년 공화국 형태의 국가 형성,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대시리아 지역(The Greater Syria)에 포함된 지역이었음.



https://en.wikipedia.org/wiki/Greater_Lebanon#/media/File:French_Mandate_for_Syria_and_the_Lebanon_map_en.svg

3. 레바논인들이 시리아 난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시리아의 내정 간섭 및 파병

- 1975년에서 1990년까지 약 15년간 지속된 레바논 내전기간을 틈타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내전 종식 이후에도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내정에 간섭
- 레바논 내 시리아군 주둔 및 직접적 내정 간섭은 다수 국민들에게 편치 않은 기억을 남김

시리아 내전의 여파

-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을 지지하는 레바논의 시아 무장정파인 헤즈볼라(Hezbollah)의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레바논 안보 위기 발생
-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ISIS와 같은 수니파 지하디스트 단체에서 레바논으로 잠입, 헤즈볼라 세력이 모여 있는 민간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거나 자행: 레바논에서 전례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레바논의 종파별 안배주의 및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으로 인한 종파균형 붕괴의 역사

- 무슬림 두 종파와 기독교의 세력균형으로 지탱되는 레바논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인 시리아인의 다수 이주에 대해 다른 종파 지도자들이 반대 입장 고수
- 이스라엘 국가 건설로 인해 1948년,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입되어 레바논 내 종파간 인구비율 구성이 붕괴되어 결국 내전으로 비화
- 팔레스타인 난민의 장기 체류는 결국 자국내 팔레스타인 난민촌 형성으로 이어졌고 레바논 당국의 손이 닿지 못하는 독립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여 분리된 사회를 형성

4. 시리아 난민에 대한 레바논 당국과 국민의 반응

시리아 난민에 대한 레바논 당국의 대응

- 난민 보호가 명시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음
- 난민 발생 초기에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 무정책으로 일관하면서도 공식 난민캠프 건설에 지속적으로 고강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
- 2013년부터 시리아와의 육로 국경 출입 제한을 시작:강력하지 않음
- 2014년 시리아인 입국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고 UNHCR난민 신규등록 중지
- 2015년 시리아인 입국 조건 및 체류자격 조정하여 명확한 목적이 없는 장기 체류를 제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레바논 국민의 정서 변화

- 유입 초반(2012-2013): 이전의 자유로운 왕래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들의 유입을 받아들였으며, 2012-2013년 당시국제단체에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레바논 가구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후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레바논 당국과는 관련없이 시리아 피란민들의 유입 및 정착이 이루어짐

- 2014년 이후: UNHCR에서 자체적으로 캠프설립을 했으나 개인 신상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난민 등록을 하지 않고 레바논 사회에 유입되는 시리아 피란민의 숫자가 증가, 거주 지역이 확장되자 특정 지역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함

- 정서 변화의 가장 주된 요인: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불안정한 레바논 경제 및 빈곤한 시리아 난민의 증가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강력한 종파주의, 코로나로 인한 의료 위기 등

5.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지위

- 시리아 내전 이전 외국인 아닌 외국인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방문자, 거주자, 투자자의 지위를 누림
- 장기화된 내전과 아사드 정권의 재집권으로 안보상 귀환할 수 없는 상황의 시리아인들이 많아지자 <단기간 머무르다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완전한 외국인이 됨
- 레바논이 난민보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 온 시리아인들은 레바논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움
-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및 종파주의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시리아 피란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점차 팽배, 일부에서는 혐오로 표출되기도 함

감사합니다.

발표 3.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지위

백 승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조 정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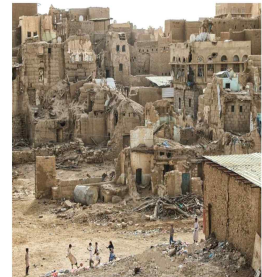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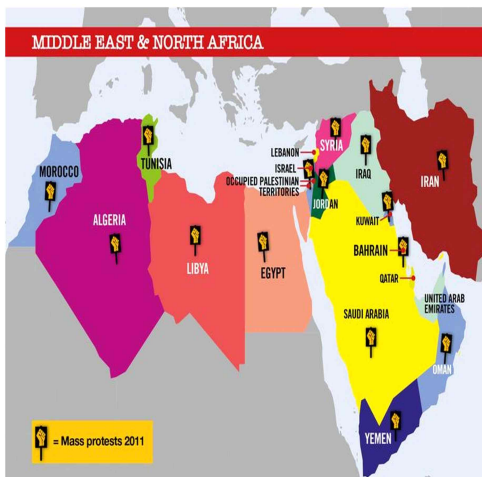
백승훈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개 요

- I. 2011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한 중동발 이주 환경
- II. 한국으로 유입된 중동 지역 이주민: 난민? 특별 기여자? 인도적 체류자?
- III.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IV.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 V. 소 결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1.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Estimated migrant stocks circa 2000 in the MENA region and Turkey, in thousands and as a proportion of total population

Country	N	%
QATAR	409	70.4
UNITED ARAB EMIRATES	1,922	68.2
KUWAIT	1,108	49.3
JORDAN	1,945	38.6
BAHRAIN	254	37.6
ISRAEL	2,256	37.3
OMAN	682	26.1
SAUDI ARABIA	5,255	23.7
LEBANON	634	18.2
LIBYA	570	10.9
SYRIA	903	5.5
TURKEY	1,503	2.2
YEMEN	284	1.4
ALGERIA	250	0.8
TUNISIA	38	0.4
EGYPT	169	0.2
MOROCCO	26	0.1

SOURCE: United Nations (2004b)

• 북서 아프리카 Maghreb

- ✓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는 1968년 이후부터 자국의 실업률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및 유럽으로의 적극적인 노동이주 정책 실시
- ✓ 2004년 자료로 모로코는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액이 전세계 4위로 33억 달러가 국외로부터 송금 됨.
- ✓ 지식인은 물론 고기술 인력 대부분인 유럽, 미국, 캐나다로 이주
- ✓ 관리직 인력난이 올정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이는 아랍의 봄 이후에도 진행 중

1.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Country	2010 population (millions)			Population %		Workforce %	
	Total	Nationals	Expatriates	Nationals	Expatriates	Nationals	Expatriates
Bahrain	1.05	0.51	0.54	48.57	51.43	36.10	63.90
Qatar	1.68	0.22	1.46	13.10	86.90	5.70	94.30
Oman	3.41	2.39	1.02	70.09	29.91	28.70	71.30
Kuwait	3.47	1.04	2.43	29.97	70.03	16.90	83.10
UAE	8.19	0.95	7.24	11.60	88.40	4.20	95.80
KSA	28.69	20.94	7.75	72.99	27.01	50.50	49.50
GCC	46.50	26.05	20.45	56.02	43.98	38.30	61.70

Source: Forstenlechner and Rutledg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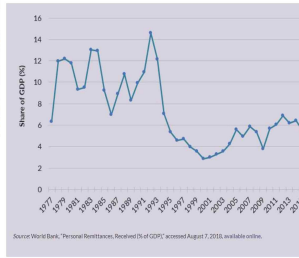
• 걸프 산유국

- ✓ GCC 국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엄청난 수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형성된 2중 노동시장이 지대추구 경제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있음.
- ✓ GCC 국가의 경우, 유가의 급등에 따른 석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경제개발이 지속됨. 개발을 뒷받침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부 수급을 필요로 함. 문제는 GCC 국가들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설비가 갖추어지고도 이주 노동자의 수요는 줄지 않음.
- ✓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를 위한 값싼 인력이 지속해서 필요했기 때문. 2020년 기준, GCC 국가의 외국인 비중은 50%가 넘으며, UAE와 카타르는 80%를 초과한다 (GLMM 2020).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Destination	Number of Egyptians
Saudi Arabia	2,925,000
Jordan	1,150,000
United Arab Emirates	765,000
Kuwait	500,000
Sudan	500,000
Qatar	230,000
Oman	58,000
Lebanon	40,000
Iraq	22,000
Bahrain	21,000
Palestinian territories	14,500
Algeria	6,600
Morocco	3,000
Syria	2,000
Tunisia	800
Mauritania	150
Total	6,236,050



- 전통적인 이주민 유출국/ 수용국 (이집트, 레바논)
 - ✓ 높은 교육열, 아랍민족주의의 영향력 등으로 이집트는 중동지역의 최대 노동 이주민을 전 중동과 서방국가로 수출하던 국가.
 - ✓ 노동 이주 외에도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 오랜 군부 독재정권 통치에 저항하는 지식층의 유출도 가장 많았던 국가였음.
 - ✓ 레바논의 경우 1975년-1990년 1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이유로 많은 이주민을 유출한 나라임
 - ✓ 이집트와 레바논은 전통적으로 이주민을 많이 유출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중동발 난민을 수용한 국가이기도 하였음.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II. 한국으로 유입된 중동 지역 이주민: 난민? 특별 기여자? 인도적 체류자?

공통점 & 상이점?



“난민”이란?

일반적으로 각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국민 등 개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외국에서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그러나, 국적국으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아 도피한 경우, 외국에 체류 중인 그 개인을 보호해줄 책임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물론 현대국 제법에서는 국제인권법이 영토국에 그 역할을 일부 부과함.)

→ 따라서 이렇게 외국에서 비호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대안적 보호로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호체제가 바로 “난민”레짐임.

“난민”이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 사례임.

“난민”이란?

Statutory Refugees (법정난민)
Convention Refugees ! (협약난민)
Political Refugees ! (정치적 난민)
Humanitarian Refugees (인도적 난민)
De facto Refugees (사실상 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 유민)
War Refugees (전쟁난민)
Mandate Refugees (위임난민)
Asylum-seekers ! (비호를 구하는 자 / 난민신청자)

1951년 난민지위협약

Article 1.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A.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

(2)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

1951년 난민지위협약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협약난민”의 4대 요건

Well-founded Fear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 Fear: Subjective element

- Well-founded: Objective element, Reasonable Possibility (**합리적 가능성**)

Persecution (**박해**)

- Threat to Life or Freedom,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Civil or Political Nexus (**5대 박해사유**)

-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Alienage (**외국인 or 무국적자**)

- Outside the Country of Origin, Inability/Unwillingness to Return

“난민” 개념의 확대? (아프리카 & 중남미)

The 1969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Article I. 2. ... every person who,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is compelled to leave his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order to seek refuge in another place outside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외부침략 등)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III. 2. ... persons who have fled their country because their lives, safety or freedom have been threatened by generalized violence, foreign aggression, international conflicts,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other circumstances which have seriously disturbed public order.” (내란인권침해 등)

“난민” 개념의 확대? (EU & UNHCR)

2001 EU Council Directive on **Temporary Protection**

“Article 2 (c) ‘**displaced persons**’ means third-country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who have had to leave their country or region of origin, ... , and are unable to return in safe and durable conditions because of the situation prevailing in that country, ... , in particular: (i) persons who have fled areas of armed conflict or endemic violence; (ii) persons at serious risk of, or who have been victims of, systematic or generalised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무력충돌, 일반화된 인권 침해 등)

UNHCR **Mandate Refugees**

(UNHCR Statute + UNGA & ECOSOC Resolutions)

→ Persons of Concern to UNHCR: Political Refugees (협약난민)

+ Humanitarian Refugees due to Armed Conflicts

& Other Man-Made Disasters (무력충돌 등)

“난민” 개념의 확대? (아시아 at AALCO)

The 1966 Bangkok Principles on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as Amended in 2001

“Article I.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1. ... persecution for reasons of race, colour, religion, ethnic origin, gender, political opinion or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

2. ... every person, who,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is compelled to leave his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order to seek refuge in another place outside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협약난민 (정치적 난민) v. 전쟁난민 등 (인도적 난민 등)

협약난민

개별 난민 지위
박해
완전한 난민 지위
보편적 적용

→ 한국 포함 아시아적 맥락,
법적 보호 v. 인도적 지원

→ But, 인도적 지원 존재~!!!

v. 전쟁난민 등

집단적 상황
인재 (무력충돌 등)
일시적 보호
대개 지역적 적용

구분	협약난민	실향민 (유민)
별칭	정치적 난민	인도적 난민, 사실상 난민, 전쟁난민, 피난민
상황	개별 난민	집단적 상황
사유	박해 (정치적 등)	인재 (무력충돌, 인권침해 등)
보호	완전한 난민 지위	일시적 보호
적용	보편적 적용	지역적 (아프리카, EU 등)

강제송환금지원칙

(in 국제난민법 & 국제인권법)

1951년 난민지위협약 제33조 1항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신청자**”부터 적용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난민지위 여부 상관 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

한국 난민법 제2조

난민신청자: 체류, 취업 허가, 생계비 및 의료지원 등

cf. **asylum-seekers**

난민/난민인정자: 거주, 취업, 사회보장, 가족결합

= **협약난민**

인도적체류자: 체류, 취업 허가, 의료지원 등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상 보호

+ 소위 **전쟁난민?**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2012년 기존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내용이 분리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 제2조에서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더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난민”이란 앞서 언급한 “협약난민”을 지칭하며, “인도적체류자”란 이러한 “난민”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음.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2012년 기존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내용이 분리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 제2조에서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더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난민”이란 앞서 언급한 “협약난민”을 지칭하며, “인도적체류자”란 이러한 “난민”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음.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체류자”란 이러한 “난민”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말함.

1951년 난민지위협약 당사국인 한국은 역시 당사국인 1984년 고문방지협약 및 1966년 자유권규약 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적인 지위를 만든 것임.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는 거주, 취업, 사회보장, 가족결합 등 다양한 처우가 보장되지만,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체류, 취업 허가, 의료지원 등의 **제한적 혜택**만이 부여

“제주 예멘 난민(?)”이 이에 정확히 해당됨.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 상황: 2018년 상반기 약 500여 명의 예멘 출신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다. (+ 대부분 젊은 남성, 당연히 무슬림, with 고급 핸드폰?)
- 배경: 예멘은 2015년 이래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병역기피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 구체적 입국 사유, 다양한 이유? 병역기피의 경우도 더욱 구체적 사유...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 결과: 결국, 이들 중 언론인 2명만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멘인들은 소위 "전쟁난민"으로 취급되어 "인도적 체류자" 신분을 부여 받음.
- 지위 결정 근거: 우리 정부가 이들의 인도적 체류 지위 부여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그러나 내전을 피해 온 사람에게 고문에 대한 우려로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내전과 같은 집단적 위기 상황에 대해 개별적인 난민 지위 판단을 하여 대부분 개별적인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III. 사례연구: 예멘 인도적 체류자

- 처우: 협약 난민이 아니기에 인도적 체류 기간에 따라 법적 체류 가능, 취업 허가 및 의료지원 등의 제한적 혜택 부여
- 비판: why not 협약난민?? (For 종족, 종교, or 정치적 의견?)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비판하고 있음.

IV.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021년 8월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서방 등 외국에 조력을 제공한 소위 부역자들을 찾아내 처단하는 상황이 도래.

대한민국 '미라클 작전' 수행하여 현지인 조력자들 중 일부를 국내로 이송시킨후 약 400명에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신설해 특별히 부여 함.

IV.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협약난민의 개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들은 외국계 기관 지원으로 인한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음. 박해사유 역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UN이 인정하는 협약 난민 지위 획득 조건을 충족함.

한국 정부에 기여를 한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인접 파키스탄 및 다른 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재정착 희망 난민"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 높음

IV.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에 역시 규정되어 있는 “재정착희망난민”은 미국, 캐나다 등 이민국가의 경우 통상 주요 난민 배출국당 쿼터를 배정해 매년 일정 수 이상의 해외 “난민”들을 본국에 정착시키는 관행이 활성화돼 있음. 국제적 책임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제도를 “재정착(resettlement)”이라 함.

한국 정부에 기여를 한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인접 파키스탄 및 다른 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재정착 희망 난민”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 높음

IV.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2조, 관련 규정에 근거해 2015년 12월 미얀마 소수민족 4가족 22명을 한국에 최초로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시킨 바가 있음.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허용은, 사실상 재정착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나름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음.

IV. 사례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한국에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신설해 한정된 범위의 대상자만을 선별하여 재정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임.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의 위협에 직면에 있는 기타 다양한 상황의 수많은 난민인정 가능성 높아 보이는 사람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상당히 협소한 접근 이라 할 수 있음.

V. 소 결

국제적으로 좁은 의미의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s)”뿐 아니라 기타 전쟁난민 등으로의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실향민(displaced persons)” 유입에 대해 폴란드를 비롯한 EU 국가들은 2001년 EU 지침에 의거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또한 EU와는 제도적으로 다르고 미비한 점도 많지만, “인도적 체류”라는 2차적 지위를 통해 소위 전쟁난민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통해 유사한 일시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의 2018년 예멘인 사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V. 소 결

그러나 보다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점은, 좁은 의미의 “협약난민”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가능하면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손쉽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대신 부여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

사실 난민 개념의 확대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이미 확립된 난민 개념을 실제 사례에서 정확히 그리고 적절히 잘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

아울러 국제적 책임 분담 및 연대 차원에서 조금씩 확대시키고 있는 한국의 “재정착 난민” 제도에 있어서도, 금번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존의 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특별 제도의 신설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좀 더 정비하여,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해외 난민들에게 적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2부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발표 4.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유해 위험 노출 정도를 중심으로

김 나 경
전남대학교

I. 서 론

2019년 전 세계 이주민 2억 4천 5백만 명 중 이주노동자는 1억 6천 9백만 명이 며, 전 세계 노동력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거주국의 노동시장 참여 율이 평균 69.0%로 거주국 국민(60.4%)보다 더 높다. 연령은 25세에서 64세까지인 노동가능 연령이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은 서비스업 66.2%, 제조업 26.7%, 농업 7.1% 순이다(ILO, 2021).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0만 2천 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84만 3천 명으로 64.8%를 차지한다. 연령은 30-39세가 33.0%로 가장 많고, 15-29세(20.5%), 40-49세(19.4%) 이다. 업종별로는 광제조업이 43.9%로 가장 많고, 도소매·숙박·음식(1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7%), 건설업(12.2%) 순이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4.0%로 이중 상용근로 자는 57.3%, 임시·일용근로자는 36.7%를 차지한다. 취업 시간은 40-50시간이 55.0% 로 가장 많고, 50-60시간(19.4%), 60시간(10.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규모는 10-29인이 28.5%로 가장 많고, 4명 이하 21.9%, 509명 19.0% 순이다(통계 청·법무부, 2022). 이처럼 이주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시장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장시간 노동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부분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 하청 업체일 가능성이 크며, 안전 보건 규제에서 벗어나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열악한 근로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함에 따라 수많은 유해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정연이나경, 2022; 정원일전용일, 2014; 김용규, 2009).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자가 종사하는 작업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업무로 인한 사고·사망·질병 등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21; 한정훈, 2019).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간으로 노동자의 사회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점차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은 더 크다.¹⁾

고용노동부(2021)에 따르면, 2021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총 7,583명으로 2011년(6,509명) 대비 1,074명 증가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비교한 정연이나경(2022)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재해율과 업무상 사망률 모두 이주노동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만, 질병재해율에 있어서는 내국인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광제조업에서의 격차가 컸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발생이 적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주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동조건,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특성, 보험적용 등 제도적 특성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이러한 요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공식적 고용 관행과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불평등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경제적 탈규제는 고도로 규제된 노동시장에서 비공식적 직업이 번성하게 했으며, 하청·임시직·비합법직화·젠더화·인종화된 근로 조건 등이 모두 비공식화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카슬밀러, 2013: 404-413). 이러한 비공식 고용의 문제와 인종화된 노동시장 분절화는 최근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정연이나경, 2022; 한정훈, 2019; 조효석, 2019).

한편, 산업재해 원인은 물적, 환경적, 인적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장공화하권철, 2016).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사망·질병과 직결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는 유해·위험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작업·기계·기구·설비 등에서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유해·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가영·이경은, 2020; Moyce & Schenker, 2018).

그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재해 실태 및 정책적 한계에 집중되었다(이영주·이승만·김영환, 2017).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국내 노동자 대비 높고, 특정 업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노동환경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배제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에 대한 취약성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내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미은, 2020; 이한별·박선영·이창훈·이영만·조교영, 2020; 장원기·정혜선, 2020; 박원열, 2014). 주로 위험요인이 노동자의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공통점은 안전보건 위험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근로환경만족도, 건강상태,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위험요인은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조건, 사업장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속변인이기도 하다(박가영·이경은, 2020; Moyce & Schenker, 2018).

박가영·이경은(2020)은 소음, 야간작업, 디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업장 업종, 사업장 규모 등 사업장 특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령, 성별, 사업장 업종, 사업장 규모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유해물질의 노출정도와 근무기간, 업무 내용

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Moyce & Schenker(2018)의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직업적 위험요소를 온도, 소음, 진동, 작업속도, 장시간 노동 등의 환경적 노출과 신체적 고통, 작업장 환경, 안전기준 부재, 폭력과 남용, 강제노동 등의 노동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 체류자격,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등으로 밝혔다. 실제로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1). 특히 분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에서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체응답자와 외국인 응답자의 유해위험 노출 비율 비교

구분	전체 응답자		외국인 응답자		차이	
	근무시간의 1/4-3/4	근무시간 내내, 거의	근무시간의 1/4-3/4	근무시간 내내, 거의	근무시간의 1/4-3/4	근무시간 내내, 거의
진동	17	6	34	15	17	9
소음	12	3	30	9	18	6
고온	13	2	23	6	10	4
저온	11	2	21	6	10	4
분진	11	4	33	16	22	12
유기용제	4	1	12	1	8	0
화학물질	5	1	10	1	5	0
간접흡연	5	0	9	0	4	0
감염물질	3	0	6	0	3	0
통증자세	29	9	33	17	4	8
사람이동	6	1	4	0	-2	-1
중량물취급	28	4	52	12	24	8
반복동작	35	27	39	39	4	12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 대비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높으며, 이는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 노출 정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조건,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등이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 도출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근로환경조사 설문내용 중 유해위험 현황에 대한 문항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s://oshri.kosha.or.kr/>)를 통해 사용신청 후 제공 받아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본인의 출생지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응답한 288명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55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23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주요 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직업 등이다. 교육수준은 4개의 범주(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거주지역은 3개의 범주(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월평균소득은 3개의 범주(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직업은 5개의 범주(관리 및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종사자,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수노무종사자)로 재분류하였다.

2)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은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근속년수, 일요일근무, 토요일근무, 초과근무, 매우빠른 작업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교육훈련경험, 업종, 사업장규모 등이다. 근속년수는 5개의 범주(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업종²⁾은 4개의 범주(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외, 사업시설관리), 매우

2)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노출에 대한 응답이 거의없음, 전현없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없음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응답자가 3명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매우 중요한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빠른 작업속도와 엄격한 마감시간은 각각 3개의 범주(근로시간 거의-내내, 근로시간 1/4-3/4, 거의 없음-전혀 없음)로 재분류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3개의 범주(5인 미만, 5-49인, 50인 이상)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유해위험 노출 정도

대상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는 환경위험(진동, 소음, 고온, 저온)과 생물화학적 위험(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인간공학적 위험(통증자세, 사람이 동,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고정자세) 등에 관한 것으로 총 15문항이며, ‘근무시간 내내(1점)’에서부터 ‘전혀없음(7점)’인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대한 신뢰성 계수는 Cronbach's $\alpha = .748$ 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21.0버전)을 활용하였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³⁾ 대상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동조건, 사업체 특성 중 집단별 표본 수가 30개 미만인 항목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Shapiro-Wilk의 유의확률 검토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나이, 교육수준, 지역별 위, 월평균소득, 직업 등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에서는 주당근무시간, 근속년수, 초과근무 등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3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65.2%, 여성 34.8%이며, 평균 나이는 46.1세(표준편차 11.64)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9.7%이고, 지역범위는 중소도시 45.9%, 대도시 44.2%이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 이 42.9%, 100만 원 미만이 42.5%이다.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8%로 가장 많고, 조작조립종사자 27.5%, 기능종사자 26.2% 순이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2	65.2	교육수 준	초졸이하	20	8.6
	여성	81	34.8		중졸	49	21.0
나이	20대	19	8.2		고졸	139	59.7
	30대	56	24.0		전문대졸이상	21	9.0
	40대	50	21.5		미응답	4	1.7
	50대	83	35.6	지역 범위	대도시	103	44.2
	60대 이상	25	10.7		중소도시	107	45.9
평균 46.1세(표준편차 11.64)			읍면		23	9.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9	42.5	직업	관리 및 사무직	13	5.6
	100-200만원 미만	100	42.9		판매 및 서비스직	21	9.0
	200만원 이상	23	14.6		기능종사자	61	26.2
					조작조립종사자	64	27.5
			단순노무종사자		74	31.8	
233(100)							

2)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은 <표 2>와 같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가 42.5%, 상용 근로자가 40.3%이다.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39.3시간(표준편차 12.08)이다.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이 31.0%로 가장 많고, 5-10년 미만 17.0%, 3-5년 미만 16.6% 순이다.

일요일 근무는 84.9%, 토요일 근무는 57.8%, 초과근무는 90.9%가 안 한다. 매우 빠른 작업속도는 근무시간의 1/4-3/4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44.6%이며, 전혀 없음-거의 없음은 41.6%이다. 엄격한 마감 시간은 전혀 없음-거의 없음이 45.5%로 가장 많다.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가 86.3%이다. 업종은 제조업이 35.6%로 가장 많고, 건설업, 숙박업 외가 각 20.6%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5-49인이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인 미만이 26.5%로 그다음으로 많다.

표 3. 대상자의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94	40.3	일요일	안 한다	197	84.9
	임시근로자	40	17.2	근무	한다	35	15.1
	일용근로자	99	42.5	토요일	안 한다	134	57.8
주당 근무 시간	18시간 이하	20	8.6	근무	한다	98	42.2
	18-36시간 이하	40	17.2	초과	안 한다	211	90.9
	36-52시간 이하	150	64.4	근무	한다	21	9.1
	52시간 초과	23	9.9	매우 빠른 속도	근무시간 거의내내	32	13.7
	평균 39.3시간(표준편차 12.08)				근무시간의 1/4-3/4	104	44.6
근속 년수	1년 미만	71	31.0	엄격한 마감 시간	전혀-거의 없음	97	41.6
	1-2년 미만	26	11.4		근무시간 거의내내	35	15.0
	2-3년 미만	28	12.2	근무시간의 1/4-3/4	92	39.5	
	3-5년 미만	38	16.6	전혀-거의 없음	106	45.5	
	5-10년 미만	39	17.0	교육훈련 경험	있다	32	13.7
	10년 이상	27	11.8		없다	201	86.3
업종	제조업	83	35.6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2	26.5
	건설업	48	20.6		5-49인	110	56.1
	숙박업 외	48	20.6		50인 이상	34	17.3
	사업시설관리	54	23.2				

2. 유해위험 노출 정도 차이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노출 정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t=-6.277, p<.001$), 교육수준($F=3.702, p<.05$), 지역범위($F=3.959, p<.05$), 직업($F=15.348, p<.001$)에 따라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며, 고등학교 졸업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지역 범위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으며, 기능종사자,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관리 및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 직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노출 정도 차이

구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test)
	전체	233	5.34	.670		
성별	남성	152	5.16	.658	-6.277***	
	여성	81	5.67	.55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0	5.39	.474	3.702*	a(b)
	중졸	49	5.30	.700		
	고졸(a)	139	5.27	.669		
	전문대졸 이상(b)	21	5.79	.681		
지역 범위	대도시(a)	103	5.46	.666	3.959*	a)b
	중소도시(b)	107	5.21	.658		
	읍면	23	5.40	.660		
직업	관리 및 사무직(a)	13	6.22	.296	15.348***	a)c,d,e b)c,d,e
	판매 및 서비스직(b)	21	5.87	.416		
	기능종사자(c)	61	5.02	.644		
	조작 및 조립종사자(d)	64	5.32	.544		
	단순노무종사자(e)	74	5.31	.683		

*: $p<.05$, **: $p<.01$, ***: $p<.001$

2)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노출 정도 차이분석

대상자의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중 토요일근무($t=2.327$, $p<.05$), 고용형태($F=4.541$, $p<.05$), 매우 빠른 작업속도($F=8.504$, $p<.001$), 엄격한 마감시간($F=6.239$, $p<.01$)에 따라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매우 빠른 작업속도가 ‘근무시간의 1/4-3/4’, ‘근무시간 거의-내내’ 차지할 경우 ‘근무시간 거의 없음-전혀 없음’의 경우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엄격한 마감시간은 ‘근무시간 거의-내내’ 차지할 경우 ‘근무시간 거의 없음-전혀 없음’의 경우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표 5.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노출 정도 차이

구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test)
	전체	233	5.34	.670		
토요일 근무	안 한다	134	5.43	.599	2.327*	
	한다	98	5.23	.73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a)	94	5.43	.684	4.541*	c<a,b
	임시근로자(b)	40	5.50	.693		
	일용근로자(c)	99	5.19	.623		
매우빠른 작업속도	근무시간 거의-내내(a)	32	4.99	.702	8.504***	c>a,b
	근무시간의 1/4-3/4(b)	104	5.28	.638		
	거의-전혀없음(c)	97	5.51	.645		
엄격한 마감시간	근무시간 거의-내내(a)	35	5.07	.726	6.239**	a<b
	근무시간의 1/4-3/4	92	5.27	.677		
	거의-전혀없음(b)	106	5.49	.612		

*: $p<.05$, **: $p<.01$, ***: $p<.001$

3. 유해·위험 노출 정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동조건 및 사업체 특성이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후진제거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12.768(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adj. R^2=0.397$ 로 39.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지역범위,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으로는 근로시간, 업종, 작업속도, 토요일 근무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 영향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상수	6.217	.231		26.940***		
성별(ref. 여성)	-.240	.083	-.171	-2.882**	.741	1.349
지역범위(ref. 읍면)						
중소도시	-.166	.071	-.124	-2.334*	.922	1.084
직업(ref. 관리 및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633	.197	-.271	-3.221**	.367	2.722
기능종사자	-.775	.182	-.509	-4.265***	.182	5.482
조작 및 조립종사자	-.451	.175	-.301	-2.573*	.190	5.257
단순노무종사자	-.659	.165	-.458	-3.986***	.197	5.084
고용형태(ref.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167	.093	.094	1.802	.948	1.054
근로시간	-.006	.003	-.113	-2.041*	.844	1.184
업종(ref. 숙박업 외)						
제조업	-.541	.145	-.387	-3.737***	.243	4.123
건설업	-.439	.151	-.265	-2.898**	.311	3.219
사업시설관리 등	-.407	.131	-.256	-3.108**	.382	2.621
작업속도(매우빠름)	.131	.022	.311	5.905***	.936	1.069
토요일근무(ref. 안한다)	-.185	.079	-.137	-2.333*	.756	1.323
R^2	.431		$adj. R^2$.397	
F	12.768***		Durbin-Watson		1.938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240$, $p<.01$).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166$, $p<.05$).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beta=-0.633$, $p<.01$), 기능종사자($\beta=-0.775$, $p<.001$), 조작 및 조립종사자($\beta=-0.451$, $p<.05$), 단순노무종사자($\beta=-0.659$, $p<.001$) 등 육체노동자가 관리 및 사무직 대비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노동조건 및 사업체 특성 중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006$, $p<.05$). 업종은 제조업($\beta=-0.541$, $p<.001$), 건설업($\beta=-0.439$, $p<.01$), 사업시설관리업($\beta=-0.407$, $p<.01$)이 숙박업 외 업종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우 빠른 작업속도⁴⁾가 근무시간 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131$, $p<.001$).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185$, $p<.01$).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지역 범위, 직업과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 중 근로시간, 업종, 작업속도, 토요일 근무 등이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중소도시 거주자, 육체노동자(판매 및 서비스직, 기능종사자, 조작 및 조립종사자), 장시간 노동시간,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 매우 빠른 작업속도, 토요일 근무 등이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남성 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정원일·전용일, 2014), 거주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Moyce

4) 매우 빠른 작업속도도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근무시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매우 빠른 작업속도가 근무시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침.

& Schenker, 2018),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재해 발생 차이에 관한 연구(이영주 외, 2017),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특정 업종, 규모 등에서 두드러짐을 밝힌 연구(정연·이나경, 2022; 장원기·정혜선, 2020), 그리고 노동시간과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한 안전보건 불평등이 있음을 밝힌 연구(한정훈, 2019) 등의 결과에 유해위험 노출 정도를 보완하여 추가로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노출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속도와 마감 시간을 이주노동자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해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주요 요소인 유해위험 노출 정도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노동조건 및 사업장 특성을 구체화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특성에 있어 국적, 거주기간, 유형, 한국어 사용, 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추후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고용노동백서.
- 김용규, 2009,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3: 이주노동자와 산업보건, 월간산업보건, 30-39.
- 박가영·이경은, 2020,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건강취약성 평가,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박원열, 2014, 임금근로자의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3), 257-266.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근로환경조사 결과(2020-2021년).
- 이미은, 2020,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보건정보제공의 매개효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30(2), 213-225.
- 이영주·이승만·김영환, 2017,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 지역발전연구, 26(3), 101-125.
- 이한별, 박선영, 이창훈, 김영민, 조교영, 2020,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로 본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수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1(1), 65-74.
- 장공화·하권철, 2016,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6(1), 90-98.
- 장원가·정혜선, 2020,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제공이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9(4), 363-371.
- 정연·이나경, 2022,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2), 51-65.
- 정원일·전용일, 2014,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에 따른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발생, Crisisonomy, 10(11), 323-344.
- 조효석, 2019, '위험의 이주화' 계속되는 참사, 외국인 노동환경 다시 주목, 국민일보, 2019년 9월 12일자.

스티븐 키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2013,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통계청·법무부, 202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한정훈, 2019,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8(1), 123-159.

ILO, 2021. ILO Global Estimates on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Results and Methodolog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oyce, S. C., & Schenker, M. (2018). Migrant workers and thei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nu Rev Public Health*, 39(1), 351-365.

발표 5.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 안 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강 영 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신 예 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 광역시에 거주하는 124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감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중요한 이의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차별감, 우울, 사회적 지지, 이주노동자

I. 서론

이주노동자는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양계민, 2010). 이주노동자란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설동훈, 2008).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인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한국인이 모든 소수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김혜신, 2015)으로 나타난 반면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우, 2005).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국내 다문화구성원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차별적이다(김기태, 2020). 특히 이주민 3명 중 1명은 직장 및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직장 및 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가은, 2019; 최영미, 송영호, 2018).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구성원으로서 차별적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적 상황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지와 같은 대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배우자, 친척, 친구, 동료, 지역사회와 같은 타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을 일컫는다(Wills, 1991).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시킨다(Cariello et al., 2022). 이렇듯 차별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차별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차별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대처자원인 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차별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처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Barrera, 2000).

국내 산업현장을 이끄는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직장 및 일터에서 차별과 우울을 경험함에도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순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가 및 통역가에 의뢰하여 설문지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 번역한 후, 번역된 설문지를 다른 번역가 및 통역가에 의뢰하여 감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 104명(83.9%), 여 20명(16.1%), 평균 연령은 31.98세(SD=6.24), 국적은 캄보디아가 44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29명(23.4%), 베트남 26명(21.0%), 필리핀 25명(20.2%)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41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7명(29.8%), 1년 이상 3년 미만 28명(22.6%), 10년 이상 12명(9.7%), 1년 미만 3명(2.4%), 무응답 3명(2.4%)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13명(10.5%), 고졸 71명(57.3%), 전문대졸 22명(17.7%), 대졸 11명(8.9%), 대학원 졸 5명(4.0%), 무응답 2명(1.6%), 종교는 기독교 14명(11.3%), 천주교 12명(9.7%), 이슬람교 23명(18.5%), 불교 46명(37.1%), 무교 29명(23.3%), 한국어 능력은 4점 만점 중 평균 말하기 점수 2.17(.44), 평균 듣기 점수 2.30(.56), 평균 읽기 점수 2.40(.58), 평균 쓰기 점수 2.10(.6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24)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04명 (83.9%)	
	여	20명 (16.1%)	
연령	20대	42명 (33.9%)	31.98 (6.24)
	30대	67명 (54.0%)	
	40대	14명 (11.3%)	
	50대	1명 (0.8%)	
국적	베트남	26명 (21.0%)	
	인도네시아	29명 (23.4%)	
	캄보디아	44명 (35.5%)	
	필리핀	25명 (20.2%)	
국내 거주기간	1년 미만	3명 (2.4%)	
	1년 이상 ~ 3년 미만	28명 (22.6%)	
	3년 이상 ~ 5년 미만	41명 (33.1%)	
	5년 이상 ~ 10년 미만	37명 (29.8%)	
	10년 이상	12명 (9.7%)	
	무응답	3명 (2.4%)	
최종학력	중졸	13명 (10.5%)	
	고졸	71명 (57.3%)	
	전문대졸	22명 (17.7%)	
	대졸	11명 (8.9%)	
	대학원졸	5명 (4.0%)	
	무응답	2명 (1.6%)	
종교	기독교	14명 (11.3%)	
	천주교	12명 (9.7%)	
	이슬람교	23명 (18.5%)	
	불교	46명 (37.1%)	
	무교	29명 (23.3%)	
한국어능력	말하기		2.17 (.44)
	듣기		2.30 (.56)
	읽기		2.40 (.58)
	쓰기		2.10 (.62)

2. 측정도구

지각된 차별감 척도

이주노동자의 지각된 차별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and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하위척도인 지각된 차별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총 8문항(예: 한국에서는 나와 같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받는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지각된 차별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차별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이주노동자의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우울증상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총 20문항(예: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거의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으로 측정하며, 우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의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인 가족 지지 4문항(예: 나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친구 지지 4문항(예: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중요한 지지 4문항(예: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한 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 .83, .80, .6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판 설문지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 번안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지역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질문, 지각된 차별감, 우울, 사회적 지지 척도로 구성하였고, 설문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지각된 차별감은 사회적 지지($r = -.224, p < .05$), 중요한 지지($r = -.195, p < .05$)와는 부적상관을, 우울($r = .328,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가족 지지($r = -.171, p = .058$)와 친구 지지($r = -.174, p = .054$)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사회적 지지($r = -.391, p < .001$), 가족 지지($r = -.195, p < .05$), 친구 지지($r = -.382, p < .001$), 중요한 지지($r = -.370, p < .001$)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2.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N=124)

변인	1	2	3	4	5	6
1. 지각된 차별감	1					
2. 사회적 지지	-.224*	1				
3. 가족 지지	-.171	.739***	1			
4. 친구 지지	-.174	.839***	.382***	1		
5. 중요한 지지	-.195*	.829***	.368***	.650***	1	
6. 우울	.328***	-.391***	-.195*	-.382***	-.370***	1
평균(M)	17.80	41.90	15.39	13.05	13.46	15.97
표준편차(SD)	6.15	6.83	2.96	2.82	2.73	7.52

*p < .05. ***p < .001.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체 사회적 지지와 각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한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각된 차별감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48, p < .05$),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68, p < .001$). 이에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beta = .401(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면서 지각된 차별감에서 우울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eta = .309(p < .001)$ 로 감소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에서 우울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음에도 유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지지요인인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중요한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차별감은 중요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086, p < .05$), 중요한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77, p < .001$). 이에 중요한 지지가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beta = .401(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중요한 지지가 투입되면서 지각된 차별감에서 우울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eta = .325(p < .01)$ 로 감소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에서 우울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음에도 유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반면,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로계수

구분	경로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1	(상수)	46.317	1.843	25.138***	42.669	49.964
	지각된 차별감 → 사회적 지지	-.248	.098	-2.538*	-.442	-.055
	(상수)	25.887	4.608	5.618***	16.764	35.011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09	.101	3.061**	.109	.509
2	사회적 지지 → 우울	-.368	.091	-4.042***	-.549	-.188
	(상수)	16.852	.808	20.844***	15.252	18.453
	지각된 차별감 → 가족 지지	-.082	.043	-1.917	-.167	.003
	(상수)	14.958	4.171	3.586***	6.701	23.215
3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71	.105	3.522***	.162	.579
	가족 지지 → 우울	-.363	.219	-1.662	-.796	.070
	(상수)	14.466	.770	18.790***	12.942	15.990
	지각된 차별감 → 친구 지지	-.080	.041	-1.947	-.161	.001
4	(상수)	21.747	3.652	5.955***	14.517	28.976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30	.100	3.303**	.132	.527
	친구 지지 → 우울	-.893	.218	-4.102***	-1.323	-.462
	(상수)	14.998	.743	20.197***	13.528	16.468
5	지각된 차별감 → 중요한 지지	-.086	.039	-2.191*	-.165	-.008
	(상수)	21.980	3.884	5.659***	14.290	29.670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25	.101	3.220**	.125	.525
	중요인 지지 → 우울	-.877	.227	-3.857***	-1.326	-.427

*p < .05, **p < .01, ***p < .001

표 5.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1	총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401	.104	.194	.608
	직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09	.101	.109	.509
	간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사회적 지지 → 우울	.091	.050	.008	.200
2	총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401	.104	.194	.608
	직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71	.105	.162	.579
	간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가족 지지 → 우울	.030	.027	-.006	.096
3	총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401	.104	.194	.608
	직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30	.100	.132	.527
	간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친구 지지 → 우울	.071	.050	-.017	.181
4	총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401	.104	.194	.608
	직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우울	.325	.101	.125	.525
	간접효과	지각된 차별감 → 중요한 지지 → 우울	.076	.042	.002	.168

그림 1.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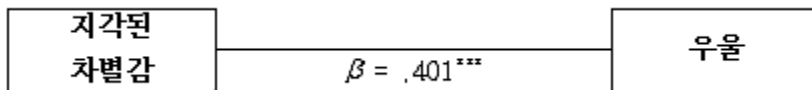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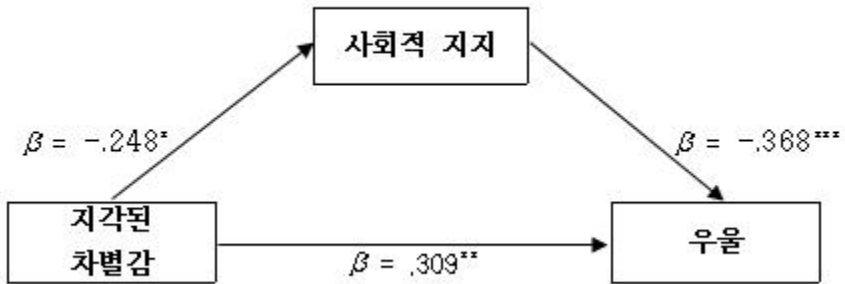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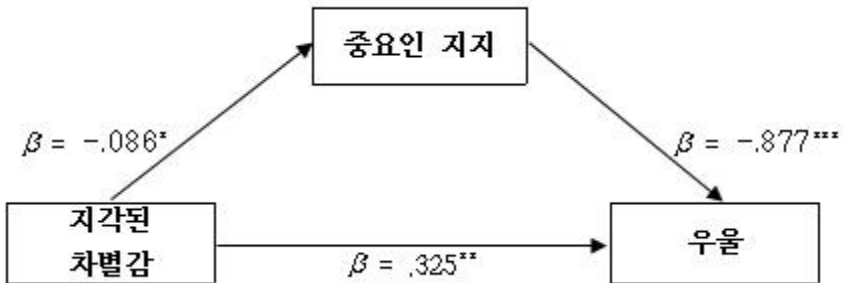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지지의 매개모형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그들의 우울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안가은, 2019). 차별과 같은 부당한 대우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은 그들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도 소수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기관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진민진 등, 2011).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직장 및 일터, 한국사회에서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을 지각한다(이안나, 임성문, 2015). 즉,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및 일터에서 차별을 지각하게 되면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공평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유용한 지지 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인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제공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거나 멀어질 수 있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로 인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며 스스로 주류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자신의 모국 출신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정보 수집 및 지지를 충족시킨다(최인이, 2014).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주노동자는 차별을 경험하면 사회적 철수로 인해 사회적 지지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차별 상황과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 자원으로, 그들이 차별로 인해 사회적 지지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차별로 인해 우울 수준이 증가할 때 차별상황을 회피하거나 참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울 완화에 도움이 된다(최영미, 송영호, 2018). 이에 이주노동

자들이 차별을 경험할 때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불공평함과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변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에 주목할만하다. CES-D 평가도구 매뉴얼에 의하면, CES-D 점수가 16점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Mulrow, Williams, Gerety, Ramirez, Montiel, & Kerber, 1995), 본 연구 대상자의 48.4%는 우울 증상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차별감 이외 이주노동자의 우울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한 지지로 세분화하였지만,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중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인이 누구인지에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하여 가족, 친구, 중요인의 지지가 이주노동자가 지각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앞선 사회적 지지와 같이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보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등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신 (2015).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7, 113-135.
- 설동훈 (2008).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보.
- 안가은 (2019). 국내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유형별 우울, 차별, 사회적 지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이안나, 임성문 (2015).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11-534.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83-797.
- 최영미, 송영호 (2018).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GRI 연구논총, 20(4), 1-22.
- 최인이 (2014). 대전·충남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전략. 사회과학연구, 25(2), 289-323.

- Cariello, A. N., Perrin, P. B., Williams, C. D., Espinoza, G. A., Paredes, A. M., & Moreno, O. A. (2022). Moderati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discrimination and health via depression in Latinx immigrants. *Journal of Latinx Psychology*, 10(2), 98-111.
- Mulrow, C. D., Williams, J. W., Gerety, M. B., Ramirez, G., Montiel, O. M., & Kerber, K. (1995). Case-finding instruments f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sett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2(12), 913-921.
- Radloff, L. S. (1977).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and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Wills,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S. Clark (Ed.s), *Prosocial behavior* (pp. 265-289). Newbury Park, CA: Sage.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에 대한 고찰

김혜련
한성대학교

【 목 차 】

- | | |
|-------------------------|---------------------------|
| I. 서론 | 3. 귀환이주 신이민의 공간적 분포와 직업구조 |
| II. 신이민 귀환이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V. 신이민 귀환이주의 영향요인 |
| 1. 중국 신이민의 개념 | 1. 국제정세의 변화 |
| 2.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 | 2. 중국의 우수인재 내수 증가 |
| III.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 실태 분석 | 3. 중국의 귀환이주 장려 정책 |
| 1. 신이민의 "귀국 붐" |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이민정서 확산 |
| 2. 해외 우수인재의 귀환이주 | V. 결론 |

I. 서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초국적 인구가동이 통제되고 제한되었으나, 국제이주는 여전히 21세기의 메가트렌드로 불릴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이주에서 모국을 이탈하여 해외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주 흐름이었다면,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모국으로의 귀환이주, 제3국으로의 재이주, 순환이주 등 새로운 이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모국으로의 귀환이주가 대표적 이주 흐름 중 하나이다.

전 세계 3대 이민 송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최근 신이민(新移民)의 귀환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국제이주보고2020(中国国际移民报告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이 해외로 송출한 이민의 규모는 1,073만 명으로, 전 세계 3위에 해당된다.⁵⁾ 화교(华侨)·화인(华人)으로 불리는 중국계 이주민은 전 세계 198개 국에 산재해 있으며⁶⁾,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이민 중심으로 귀환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이민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륙을 떠나 해외에서 영주자격을 비롯한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화교, 이미 현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화인, 영주자격 혹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는 단기 이민이 포함된다.

국제이주의 새로운 트렌드로 성장한 귀환이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모국과 거주국의 이민 정책은 물론, 미시적 차원에서 이주민 개인의 생활환경, 가족 재결합, 이주비용 등도 귀환이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열악해진 서구의 경제환경, 미국유럽 각국의 엄격한 이민정책, 중국의 경제성장과 우수인재 내수 증가, 인재유치를 위한 중국의 귀환 장려정책,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민에 대한 혐오정서 확산 등 영향요인의 작용 하에 신이민, 특히 해외 우수인재(海外高层次人才)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신이민의 귀환이주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적인 “귀환 인재(回流人才)” 수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⁷⁾ 예컨대 중국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유학생의 규모는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해 10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35.03% 증가한 수치이다.⁸⁾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 귀환한 해외 유학생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귀국 붐(归国潮)”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연구 성과가 탁월한 해외 우수인재도 중국의 귀환 장려정책에 힘입어 모국 귀환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이민 중 “하이구이(海归)”⁹⁾로 불리는 해외 우수인재, 귀국 유학인재는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문 및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혁신창업을 주도하고 있다.¹⁰⁾

5) 『중국국제이주보고2020(中国国际移民报告2020)』, <http://www.ccg.org.cn/archives/61145>(검색일: 2022.04.17)

6) 中国侨网. <http://www.chinaqw.com/ydy/pc/2019/12-21/240525.shtml>(검색일: 2022.12.05).

7) 中国网教育, "<https://baijiahao.baidu.com/s?id=1652668974093810739&wfr=spider&for=pc>" (검색일: 2022.12.05)

8) "归国留学大军破百万", 海投全球 2022년 10월 24일 보도, <https://baijiahao.baidu.com/s?id=1747548552165793528&wfr=spider&for=pc>(검색일: 2022.12.05).

9) 하이구이(海归)는 해외 유학 후 중국으로 돌아온 귀국 유학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제이주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는 귀환이주에 주목하여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진출한 중국 신이민의 모국 귀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며, 아울러 이러한 신이민의 귀환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신이민 귀환이주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이 연구는 귀환이주가 새로운 국제이주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신이민의 귀환이주 실태, 특징,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중국 신이민의 개념과 귀환이주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중국 신이민(新移民) 개념

중국인의 해외 이주 역사에서 배출된 화교(華僑)·화인(華人)은 중화경제권을 중심으로 막강한 경제적 파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198여 개 국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경계를 초월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화교화인청서(华侨华人蓝皮书)』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거주 화교·화인은 총 6,000만 명이며¹⁰⁾, 그들은 초국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상호보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 차례의 이민의 붐이 형성되었다. 제1차 이민의 붐은 개혁개방 초기 가족재결합 및 해외 유학의 방식으로 대규모의 중국계 이주민이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제2차 이민의 붐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는데 상당한 규모의 고학력자가 기술이민의 형태로 선진국으로 이주하였다. 제3차 이민의 붐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중국계 이주민이 투자이민, 기술이민, 유학이민, 환경이민 등 다양한 이주 형태로 해외로 이주하였다. 이렇듯 19세기 쿨리(苦力),

10) 김혜련(2020), "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62집, p.146.

11) 中国侨网. <http://www.chinaqw.com/ydy/pc/2019/12-21/240525.shtml>(검색일: 2022.12.05)

계약화공(契约华工) 등 신분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입한 중국계 이주민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교육수준과 경제실력이 대폭 향상된 신이민은 북미, 유럽 등 선진국으로 대거 진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의 귀환이주가 가시화되었다.

중국계 이주민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적에 따라 화교와 화인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들의 이주 시기, 정체성 등에 따라 신이민(新移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 신이민에 대해서는 수용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 본토로부터 이주민이 유입된 경우, 중국계 이주민을 신이민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경우 1965년 이민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으로 유입한 중국계 이주민을 신이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이후 대규모로 해외에 진출한 중국계 이주민, 즉 구화교화인(老华侨华人)과 구분하기 위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륙을 떠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중국계 이주민을 신이민으로 정의한다. 즉 신이민은 해외에서 합법적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화교, 이미 현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화인, 영주자격 혹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는 단기 이민이 포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이민의 귀환이주 흐름 및 특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신이민 중에서도 귀환비율이 높은 우수인재 및 귀국 유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공중앙조직부(中组部)가 2017년에 발표한 『국가해외우수인재유치계획관리방법(国家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管理办法)』에 따르면 신이민에 포함되는 해외 우수인재는 화교·화인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고급(副高级) 직급의 우수인재, 자주적 지식재산권(自主知识产权)을 확보한 창업형 인재, 국내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기타 인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한 우수인재 부족을 경험한 중국은 1980년대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중국으로 유입한 해외 우수인재 중 상당한 부분은 화교·화인 출신 신이민이다.

신이민 중 귀환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은 바로 해외로 진출한 중국 유학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송출국으로 2019년까지 이미 656만 명의 유학생이 해외로 진출하였다.¹²⁾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으로 유입한 중국 유학생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22년 11월 기준 중국 유학생은 59,432명으

12) “201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wz/gk/szrs/tjgb/201906/W020190611539807339450.pdf>(검색일: 2022.11.27).>

로 집계되어 전체 유학생(197,988명) 규모의 30.01%를 차지한다.¹³⁾ 유학생을 비롯한 우수인재의 해외이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심각한 두뇌유출을 경험하게 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더욱 많은 우수인재를 필요로 하였으나, 유학인재의 해외 체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국내의 이러한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유학인재 귀국 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 귀환한 해외 유학생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

학교·화인으로 불리는 중국계 이주민은 대표적 디아스포라(diaspora)집단이다. 그들은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였으며,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기반으로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귀환인식을 간직하고 있다.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중국계 이주민은 디아스포라집단의 일부분으로,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탈영토적 경계를 넘어 분산된 민족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이주, 문화 변용, 정체성 정치,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며, 특히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초국적 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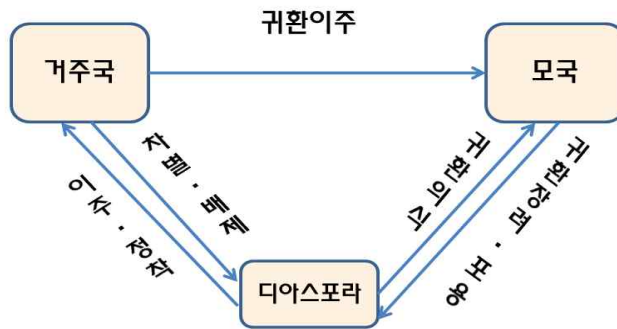
샤프란(W. Safran)은 흩어진 민족으로서의 디아스포라는 모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갈려는 귀환의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국 귀환이라는 꿈은 모국 및 거주국 현실에 따라 달라진다. 돌아갈 수 있는 모국이 부재할 수도 있고, 모국이 정치적·사회적 이유 및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들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집단은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한 거주국을 이탈하는 대가가 너무 크거나,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인식할 경우,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꿈은 유예되어 민족분산을 지속한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귀환인식은 해당 집단과 모국, 그리고 현재 정착하고 있는 거주국 삼자간의 관계에 따라 변화된다.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 또는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11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검색일: 2023.01.11)

14) 임채완 · 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pp.25-27.

차원에서 그들은 거주비용, 생활환경, 가족 재결합 등 다양한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귀환이주를 선택한다. 아울러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거시적 차원에서 귀환이주를 분석할 경우, 귀환이주는 거주국의 배출요인(push factor)과 모국의 흡입요인(pull factor), 나아가 해당 디아스포라집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거주국의 차별정책과 주류사회 구성원의 배제의식, 모국 정부의 적극적 수용과 지원정책, 디아스포라집단의 강한 민족정체성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그들의 모국 귀환이주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¹⁵⁾

〈그림 1〉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 실태,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에 거시적, 미시적 차원 즉 국제정세의 변화, 신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중국의 귀환 장려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이민정서가 확산되면서 현지 적응이 한층 더 어려워진 신이민의 현실 등으로 나누어 신이민의 귀환이주가 발생하는 영양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5) 김혜련(2015), “중국 귀환동포정책의 특징 분석”,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8권 1호, p.41.

Ⅲ.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 실태 분석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전, 신흥공업국가의 등장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행되던 초국가적 인구이동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인구이동이 새로운 이민 흐름으로 등장하였고, 귀환이주단기이주순환이주가 점차 영구적 이주를 대체해 국제이주의 주요한 이주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고향인 모국을 이탈해 거주국에서 정착하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이주가 발생하는 동시에 양국을 오가면서 초국가적 삶을 영위하는 순환이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같은 맥락으로 개혁개방이후 신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해외 정착 신이민의 귀환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신이민의 "귀국 붐"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 귀환한 신이민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귀국 붐(归国潮)”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환이주 한 신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학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송출국으로, 현재 중국 유학생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 미국으로 52명의 유학생을 파견하면서부터 그 동안 주춤했던 해외 유학 붐이 재개되었으며¹⁶⁾, 2019년 12월말까지 총 656만 명의 유학생이 해외로 떠나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송출국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 귀환하는 중국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해외 유학생 귀국율이 2011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하였으며, 2021년에는 귀국율이 84.74%에 이르렀다. 이렇듯 중국 해외 유학생의 귀국 행보가 "귀국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유학한 후 현지에서 취직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최근 들어 모국으로 귀환하는 유학생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졸업 후 해외 체류 대신 귀국한 유학생 비율은 14.36%에서 84.74%로 약 6배 증가하였다. 20여 년 사이에 해외 취업보다 모국 귀환을 선호하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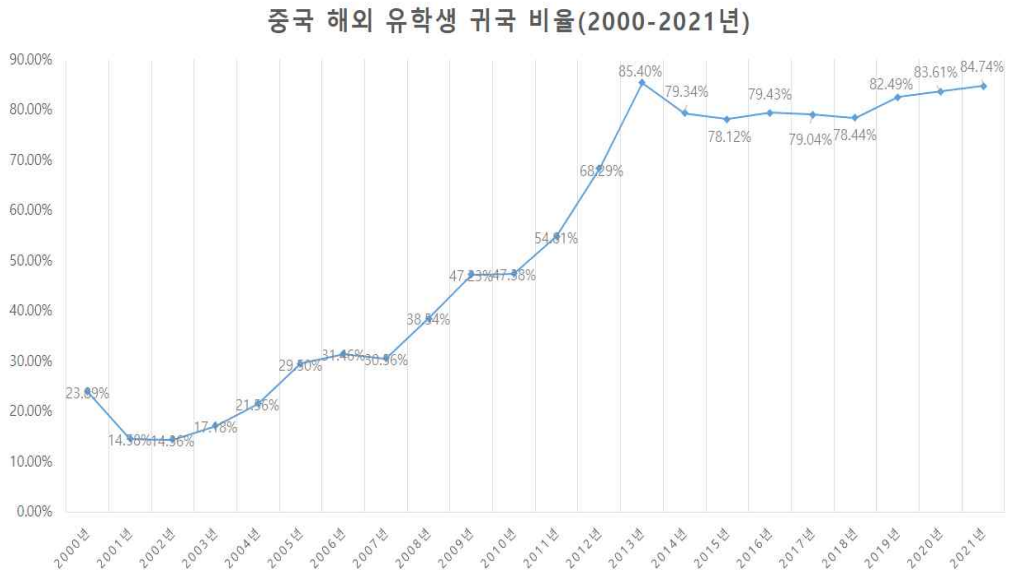
중국 국내에서는 유학생의 이러한 "귀국 붐"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귀국

16) 丁雪峰(2019), 「三大因素推动归国留学生人数攀升」, 『人力资源』2019年第8期, 辽宁省社会科学院, p.30.

17) 김혜련(2020), p.149.

"봄"은 2000년부터 2010년으로 중국 유학생의 귀국율이 최저 14.36%에서 47.38%로 대폭 상승하였고, 제2차 "귀국 봄"은 2011년부터 2013년으로 유학생 귀국율이 54.81%에서 85.40%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3차 "귀국 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학생의 귀국율이 70%대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4차 "귀국 봄"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유학생의 귀국율은 80%대로 확대되었다. 즉 현재 중국의 해외 유학생 귀국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다양한 우수 인재가 중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그림 2〉 중국 해외 유학생 귀국율(2000-2021년)



출처: 중국 교육부 유학생 통계수치 저자 정리 분석.

2. 해외 우수인재의 귀환이주

중국의 신이민 귀환이주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이주한 신이민의 질적 수준도 대폭 향상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투자이민, 기술이민, 유학이민 등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수인재가 모국으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제3차 이민의 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단순노문인력의 해외이주와 달리, 최근 중국의 해외 이주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이민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고학력 엘리트들의 기술이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해외로 나간 유학생이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자녀 교육과 더 좋은 삶을 마련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대규모의 해외이주와 함께 중국은 전례 없는 인재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고급인재 유출 규모는 세계 1위이다. 그 중 과학기술 및 이공계 인재의 해외 체류 비율은 87%에 이른다.¹⁸⁾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천인계획(千人计划)”, “백인계획(百人计划)”,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 “적자계획(赤子计划)”, “춘취계획(春晖计划)” 등이 대표적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젝트이다. 또한 2004년에는 『외국인 중국 영구 거주 심사 관리 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住审批管理办法)』을 제정하여 해외 우수인재 그린카드(人才绿卡)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집행 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的意见)』,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 실시 의견(关于实施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的意见)』, 2010년 『국가 중장기 인재 발전 기획 강요(2010-2020)(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 등을 제정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⁹⁾

중국으로 유입한 해외 우수인재 중 상당한 부분이 신이민이다. 천루이쥘(陈瑞娟)에 따르면, 중국의 1,000여 개 고등교육기관 중 총장, 원장, 학과 주임의 80~90%가 해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²⁰⁾ 또한 2016년 국가중점프로젝트 책임자 중 70%는 "하이구이(海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중국 지자체 중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광저우시의 경우, 2016년부터 "해외청년인재유치계획"을 발표해 화교화인 우수인재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이미 52명의 인재를 유치하였다. 이러한 화교화인 우수인재 중 73.08%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17.31%는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 및 의료기관에 분포되어 있다.

18) 人民网海外版(2013년 7월 18일 보도),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3-07/18/content_1270252.htm(2019.06.22. 검색)>

19) 김혜련(2019),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p.868

20) 陈瑞娟(2021), "新发展阶段海外华侨华人高层次人才回流趋势研究", 『青年现象与问题研究』234期, p.95.

이렇듯 중국 국내로 유입한 해외 우수인재 중 신이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이민은 중국 창업시장의 신생 역량으로서 창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귀국한 "하이구이(海归)"는 중국을 창업국가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유학과 해외 기업 근무를 통해 쌓은 전문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바이두(百度)의 공동창업자 리옌홍(李彦宏), 화웨이(华为) CTO 리싼치(李三琦), 샤오미(小米) 공동창업자 린빈(林斌) 등이 대표적인 "하이구이"이다. 그들이 창업한 기업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비롯한 기술기반 산업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2017 하이구이 인재 취업 및 창업 보고서』에 따르면 귀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금융, 인터넷, 과학기술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또 그들이 주로 창업에 뛰어든 분야는 교육, 전자상거래, 생활서비스 등에 집중되었으며, 귀국 유학생 창업은 저령화 추세를 보이면서 창업자 70%정도가 3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²¹⁾

3. 귀환이주 신이민의 공간적 분포와 직업 구조

중국으로 귀환한 신이민은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국이 해외로 송출한 이민의 규모는 1,07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²²⁾ 대부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분포되었다(〈표-1〉 참고). 이에 따라 중국으로 귀환한 신이민도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예컨대 광저우의 경우 2019년에 유입한 신이민 우수인재 중 58.6%가 미국, 영국, 호주로부터 귀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³⁾

21) 김혜련(2019), "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문화연구1』 62집, pp.150-151.

22) 『중국국제이주보고2020(中国国际移民报告2020)』, <http://www.ccg.org.cn/archives/61145>(검색일: 2022.04.17)

23) 广州日报数据和数字化研究院(2019), 『广州人才发展白皮书』, 广州市人才工作领导小组办公室; 陈瑞娟(2021), p.96 재인용.

〈표-1〉 중국 신이민의 주요 정착국

2019년 순위	국가	2015년 규모	2019년 규모
1	미국	2,676,697명	2,899,267명
2	일본	714,570명	784,763명
3	캐나다	645,278명	691,498명
4	호주	508,870명	641,624명
5	한국	609,332명	620,295명
6	싱가포르	448,566명	380,145명
7	이탈리아	200,372명	228,231명
8	영국	198,472명	225,385명
9	방글라데시	162,772명	162,917명
10	스페인	155,713명	164,695명

출처: 『中国国际移民报告2020』, <http://www.ccg.org.cn/archives/61145>(검색일:2022.12.20)

모국으로 귀환한 신이민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비롯한 일선도시(一线城市)²⁴)와 항저우(杭州), 수저우(苏州) 등 신일선도시(新一线城市)²⁵)에 집중되는 공간적 분포 특징을 나타낸다. 중국 신이민의 출신지역은 다양하다. 1978년 국제이주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초기 해외로 진출한 중국 신이민은 대부분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이거나 샤먼(厦门), 항저우(杭州) 등 연해도시 출신이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허룽장성(黑龙江省)을 비롯한 동북3성은 물론, 산시(山西), 스촨(四川), 후난(湖南) 등 내륙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신이민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신이민 출신지역은 거의 전국 각 지역을 망라하게 되었다. 신이민의 다양한 출신지역과 달리, 귀환 신이민은 일선도시와 신일선도시에 집중되었다. 『중국 유학생 귀국취업 보고서 2015』에 따르면, 귀국 유학생 중 49.34%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비롯한 일선도시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알리바바의 고향 항저우, 국가 주요 신형 하이테크 산업 중점 도시 수저우, 중국 서남 지역 요충지인 청두(成都), 4대 직할시에 해당되는 충칭(重庆)·텐진(天津) 등 신일선도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국내 도시 발전이 점차 균형이 이루어지고

24) 일선도시란 중국 국내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도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국의 일선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深圳)이 포함된다.

25) 신일선도시는 『제1재정주간(第一财经周刊)』이 중국의 338개 지급별 도시(地级市)를 종합평가하여 선정한 중국의 대도시이다. 신일선도시의 선정기준은 도시의 상업자원 집중도, 지리적 위치 및 교통 편리성, 도시 활력, 생활방식의 다양성, 미래지향성 등이다. 2019년에 선정된 15개 신일선도시는 청두, 항저우, 충칭, 우한(武汉), 시안(西安), 수저우, 텐진, 난징(南京), 창사(长沙), 정저우(郑州), 둥관(东莞), 칭다오(青岛), 선양(沈阳), Ningbo(宁波), Kunming(昆明)이다.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4%B8%80%E7%BA%BF%E5%9F%8E%E5%B8%82>(검색일: 2022.12.11)>

있어 취업기회와 생활수준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된다.

다른 한편, 귀환이주 신이민의 직업적 분포는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신이민 취업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 업종은 구인난 문제가 만연하고 있지만, 신이민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인터넷·금융업계는 고급인력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하이구이(海归)” 중 9.5%가 금융업계에 취업하고자 경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업계 수용 가능 인력보다 4.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렇듯 우수인재, 유학생 등 신이민의 귀환이주가 확대되면서 중국 국내의 취업난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IV. 신이민 귀환이주의 영향요인²⁷⁾

2000년대 이후 해외 우수인재,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귀국 붐"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이민의 귀환이주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1. 국제정세의 변화

최근 들어 중국은 신이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이구이" 귀국 열풍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유학한 이후 현지에서 취직하여 정착하는 것이 대부분 유학생의 선택이었다면, 현재는 모국으로 귀환하여 국내에서 취직하는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였다. 약 20년 사이 해외 취업보다 국내 취업을 선호하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해외에서 취업할 경우 중국에서 보다 높은 연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중국 경제와 일자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26) 发改委, “大数据分析2021年留学归国就业学生首超百万, 疏通海归就业“中梗阻”需持续精准发力” https://www.ndrc.gov.cn/xxgk/jd/wsdwhfz/202109/t20210907_1296152.html(검색일: 2023.01.11)
27) 제4장의 내용은 김혜련(2020), “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제62집, pp.145-158의 일부 내용을 가필 정정하여 재구성함.

되자 많은 유학생이 귀국을 결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중국의 GDP는 8배 성장했고, 경제 순위도 세계 7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

또한 열악해진 서구의 경제환경도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유럽 각국의 엄격한 이민정책 시행 때문에 졸업 후 현지 취업이 어려워져 유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귀국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시기 미국의 반(反)이민정서가 강화됨에 따라 유학생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하거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아울러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졸업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 구체적으로 2019년 미국의 전체 유학생 중 33.7%(36만 9,548명)가 중국 유학생으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증가세는 1.7%에 그쳐 지난 10년 간 연평균 20% 증가하는 수치에 비해 최저 수준이다.²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중국 유학생의 규모가 감소하는 동시에 졸업 후 현지 취업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환하는 유학생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의 우수인재 내수 증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40여 년간 끊임없는 시장개혁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교역로를 개척하고, 해외 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78년 수출 총액이 전 세계 무역거래의 1%정도에 불과한 100억 달러였던 중국이 현재는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으로 급부상하였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대폭 하락하였고, 2022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일상 회복에 나선 가운데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도시 봉쇄를 자주 실시한 탓에 산업,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제시하여 주변 신흥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제조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와 중국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제시

28) 중앙일보(2019년 11월 23일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752>(검색일: 2023.01.11)>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신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구조도 노동집약형에서 점차 자본집약형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더 많은 첨단 우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문화에 익숙한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고, 해외로 진출한 중국 기업은 글로벌 경험이 있는 중국 인재를 선호하면서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졌다.²⁹⁾

요컨대 중국 신이민이 다수 진출한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제 부진, 팬데믹 이후 더욱 확산된 반이민정서는 중국 신이민이 현지 취직을 포기하고 모국으로 귀환하는 송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반면에 중국 국내의 꾸준한 경제성장과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신이민 모국 귀환의 흡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중국의 귀환이주 장려 정책

전 세계 100여 개 국에 산재해 있는 중국 신이민이 현지 정착을 포기하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적극적인 귀국 장려 정책이다. 인재유출 규모가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받았던 중국은 국내 심각한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인재강국전략을 추진하여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³⁰⁾ 중국에서 적극 유치하는 해외인재에는 외국인 인재와 해외 체류 유학인재가 포함된다. 중국은 교육부, 중국과학원, 공산당중앙판공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부서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인계획”, “천인계획”, “장강학자장려계획”, “유학귀국인원 과학연구 착수기금”, “춘취계획” 등이다.

“백인계획”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장 일찍 가동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젝트로서, 1994년 중국과학원에서 국내 인재단층(人才断层)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인재 유치 계획이다. “백인계획”은 국내 학술 연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리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³¹⁾ “장강학자장려계획”은 1998년 교육부에서 홍콩의

29) 양미경(2017), 「인재순환 관점의 외국인재 유치정책」,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30) 김혜련(2019), p.870.

31) 김혜련(2019), p.871.

화교 사업가 리자청(李嘉誠)과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 협력 인재육성 프로젝트로서³²⁾,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대학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2008년 공산당중앙판공청에서 시행한 “천인계획”은 가장 주목받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젝트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글로벌 수준의 교수 및 학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첨단 기술 발전, 신흥 학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재를 유치하여 중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³³⁾

“백인계획”과 “천인계획”을 비롯한 우수인재 프로젝트는 외국인 인재와 화교화인 출신 인재를 모두 포함하는 전략이라면, “유학귀국인원 과학연구 착수기금”, “춘취계획”, “고급 우수 유학인재 귀국지원계획” 등은 전문 유학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유학귀국인원 과학연구 착수기금”은 1990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첫 유학인재 귀국 장려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취직한 귀국 유학생에게 연구 착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³⁴⁾ 지원금 신청 자격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유학한 45세 미만의 귀국 유학생이 교육기관이나 연구단체에 취직한 경우, 귀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³⁵⁾ 1997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춘취계획”은 해외 유학인재의 귀국 후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으로, 귀국 유학생에게 자금과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 체류 유학생의 모국 귀환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02년에 실시한 “고급 우수 유학인재 귀국지원계획”은 해외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과학자 유치를 위해 자금과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학인재는 1인당 60만 위안의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³⁶⁾ 2006년에는 “유학인원창업지원계획”을 시행하여 유학인재들이 중국으로 귀국한 후 창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과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2010년에 추진한 “적자계획(赤子计划)”은 “국가를 위한 해외적자의 행동계획(海外赤子为国服务行动计划)”의 약칭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모국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유학생 귀국 장려 프로젝트를

32) 전영란(2011), 「中國의 海外留學人才 育成政策와 成果」, 『동아인문학』제20권, 동아인문학회, p.509

33) 구자역·박승재·김한나(2014),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p.6.

34) 中国留学网, <<http://www.cscse.edu.cn/publish/portal0/tab86/default.htm>(검색일: 2020.01.02.)>

35) 전영란(2011), p.506.

36) 구자역·박승재·김한나(2014), p.4.

추진해 해외 유학인재의 모국 귀환을 독려한 동시에 각 지방정부도 현지 실정에 맞는 유학생 귀국 장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상하이의 “푸장인재계획”, “만명해외유학인재집결프로젝트”, 우시(无锡)의 “530계획”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 정부는 상술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학인재에게 자금과 관련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업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박사급 위주의 귀국 유학생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용단지 및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4년 난징(南京)에 최초로 설립된 귀국 유학생 창업단지는 전국에 280개로 확장되었으며, 16,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만 명이 근무 중이다.³⁷⁾

또한 2018년 리커창(李克强)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 유학생은 중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더욱 많은 우대정책을 통해 그들의 귀국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³⁸⁾ 이에 따라 중앙부서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현지 실정에 따라 맞춤형 귀국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현재 귀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 면세차량 구입, 창업 혜택, 귀국 후 자녀 입학 지원, 학술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이민정서 확산

모국을 떠난 이주민은 익숙했던 자신의 문화권을 이탈해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언어 문제, 재정문제, 사회적응, 고국에 대한 향수, 일상생활 어려움, 현지 주류사회 구성원의 배제와 차별,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현지 적응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이주민은 현지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출신국과 거주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점차 현지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참여하고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주민은 거주국에 정착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라도 주류사회로의 진출은 용이하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구에서 제노포비아(Xenophobia), 특히 아시아계,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신이민의 현지적응은 더 어렵

37) “식지 않는 중국의 창업 열풍”, <<https://blog.naver.com/sem2017/221428470564>(검색일: 2023.01.02)>

38) 丁雪峰(2019), p.32.

게 되었다. 2020년 미국 16개 대도시 경찰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혐오범죄는 전년보다 7% 줄었지만, 아시아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150%나 증가했다.³⁹⁾ 이러한 혐오범죄는 트럼프정부시기 수면위에 올라온 반이민정서가 코로나19로 인해 반중, 반아시안 정서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이민정서 속에서 중국 신이민은 언어, 문화, 차별 등으로 인해 현지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강한 주류사회 회귀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중국 신이민은 현지 전통문화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차별, 적응 어려움과 달리, 신이민은 언어능력과 해외 경험, 첨단기술 확보로 인해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대상이다. 특히 해외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유학인재, 연구성도가 탁월한 우수인재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중국 정부의 다양한 귀국 장려 정책이 마련되자 반이민정서 속 현지적응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던 신이민이 해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고 귀국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V. 결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이주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국가 간 물적교류는 물론 인적교류도 일반화되고 있다. 과거에 이민은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고도 산업국가로 한 방향으로의 이민이거나, 계약에 의한 일시적 이민과 영주이민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등 전 지구적인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민의 방향이 쌍방향 또는 순환이주로 변화하였다. 일시적인 이주민이 장기체류하거나, 영주이민을 간 이주민이 모국으로 귀환하기도 한다. 귀환이주, 순환이주, 재이주가 국제이주의 또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중국의 신이민 귀환이주에 주목하여 우수인재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이민의 귀환이주 실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신이민의 모국 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39) "아시아 혐오 확산, 흑인 폭력만 부각되면 또 다른 인종갈등 낳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511070003632?did=NA>(검색일: 2023.01.10)

연구결과, 개혁개방 이후 투자이민, 기술이민, 유학이민, 환경이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 신이민이 2000년대 이후 모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귀국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중국으로 귀국한 유학생의 규모는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해외 우수인재도 중국의 귀환 장려 정책에 힘입어 모국 귀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귀환이주한 신이민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일선도시와 항저우, 수저우 비롯한 신일선도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인터넷·금융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연구는 중국 신이민의 귀환이주 요인을 국제 정세 변화, 중국의 우수인재 내수 증가, 중국의 귀국 장려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인해 현지적응 어려움 등 4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열악해진 서구의 경제환경과 엄격해진 이민정책으로 인해 신이민들의 현지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졌으며, 중국의 경제성장과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도 그들의 모국 귀환을 촉진시켰다. 다음으로 “장강학자장려계획”, “유학귀국인원 과학연수 착수기금”, “춘취계획”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귀국 장려 정책도 신이민의 귀환이 확대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거주국의 반이민정서, 사회적응 어려움, 강렬한 주류사회 복귀 욕구는 신이민 모국 귀환의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요컨대,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중국정부의 적극적 우수인재 귀국 장려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신이민이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우수인재 및 유학인재 유치에 모국으로의 귀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모국사회 재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밀집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 귀환 신이민들에게 더욱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인재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그들의 연령, 학위, 언어능력, 전문지식 등에 따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귀환 신이민 창업 기금을 마련하거나, 그들에게 공평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마련하는 등 귀국 신이민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자역·박승재·김한나(2014),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련(2015), "중국 귀환동포정책의 특징 분석", 『Journal of China Studies』, 제 18권 1호.
- 김혜련(2019),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 김혜련(2020), "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62집, p.146.
- 양미경(2017), 「인재순환 관점의 외국인재 유치정책」,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란(2011), 「中國의 海外留學人才 育成政策와 成果」, 『동아인문학』 제20권.
- 이혜경 외(2016), 『이민정책론』, 박영사.
- 임채완 · 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아시안 혐오 확산, 흑인 폭력만 부각되면 또 다른 인종갈등 낳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511070003632?did=NA>
(검색일: 2023.01.10)
- 『중국국제이주보고2020(中国国际移民报告2020)』, <http://www.ccg.org.cn/archives/61145>(검색일: 2022.04.17.)
- 중앙일보(2019년 11월 23일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752>(검색일: 2023.01.11.)>
- 陈程吴瑞君(2014), "回流视野的大陆新移民", 『广西社会科学』第232期.
- 陈瑞娟(2021), "新发展阶段海外华侨华人高层次人才回流趋势研究", 『青年现象与问题研究』234期.
- 丁雪峰(2019), 「三大因素推动归国留学生人数攀升」, 『人力资源』2019年第8期, 辽宁省社会科学院.
- 广州日报数据和数字化研究院(2019), 『广州人才发展白皮书』, 广州市人才工作领导小组办公室; 陈瑞娟(2021).

发改委, “大数据分析2021年留学归国就业学生首超百万, 疏通海归就业“中梗阻”需持续精准发力”

https://www.ndrc.gov.cn/xxgk/jd/wsdwhfz/202109/t20210907_1296152.html
(검색일: 2023.01.11.).

人民网海外版(2013년 7월 18일 보도),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3-07/18/content_1270252.htm(2019.06.22. 검색)>.

中国侨网. <http://www.chinaqw.com/ydyjpc/2019/12-21/240525.shtml>(검색일: 2022.12.05.).

中国网教育, "<https://baijiahao.baidu.com/s?id=1652668974093810739&wfr=spider&for=pc>(검색일: 2022.12.05.)

中国留学网, <<http://www.cscse.edu.cn/publish/portal0/tab86/default.htm>(검색일: 2020.01.02.)>

"归国留学大军破百万", 海投全球 2022년 10월 24일 보도, <https://baijiahao.baidu.com/s?id=1747548552165793528&wfr=spider&for=pc>(검색일: 2022.12.05.).

2023 공동학술대회 - 탈경계시대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발표자료집

학술대회 일자: 2023년 1월 26일.

자료집 제작: 2023년 1월 18일.

자료집 인쇄: 2023년 1월 19일.

본 자료집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